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2010. 10.

순서

2010. 10. 5(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시

한 선 교 의원	1
강 승 규 의원	5
김 성 태 의원	9
나 경 원 의원	19
이 철 우 의원	23
조 진 형 의원	45
진 성 호 의원	53
서 갑 원 의원	65
김 부 겸 의원	71
장 병 완 의원	75
정 장 선 의원	81
최 문 순 의원	85
김 창 수 의원	95
김 을 동 의원	107
이 용 경 의원	115

〈 목 차 〉

〈한 선 교 의원〉	1
------------------	---

【서면질의】

1. 충분한 고증을 통한 환수 대상 문화재 파악 필요	3
-------------------------------------	---

〈강 승 규 의원〉	5
------------------	---

【서면질의】

1. 도난에 취약한 개인 소장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 적극 관리 필요	7
1)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문화재 도난에 대한 대책	
2) 도난에 더욱 취약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필요	
3) 문화재의 종합적인 도난 방지 대책 조속 강구	
2. 민간단체 지원, 지난 7년간 9배 증가	8
1) 민간단체 지원 건수와 금액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므로 일회성 사업이나 직접수행 가능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원칙 없는 행정은 없어야 할 것임	
2) 민간단체 지원이 일부단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후 감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김 성 태 의원〉	9
------------------	---

【서면질의】

1. 산하 기관들 인사 철저 필요	11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석의 이유는 무엇인가?	

- 2) 연구소장 선임과정 및 수습책에서 보여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 3) 소장 공석의 이유가 탈락자의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지?
- 4) 의혹제기로 심사위원단만 교체한 채 재심사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러한 재심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심사 과정에 대한 NGO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 문화재청, 숭례문 소실 후 아직 정신 못 차려 13

- 1)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이 아직도 미흡한 이유
- 2) 낙산사, 숭례문 화재 이후 종합방재대책을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재대책이 미진한 이유는?
- 3) 목조문화재에 방염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당한 방염제를 찾지 못하고 목조문화재를 화재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4) 조속히 방재처리가 안된 54개 목조문화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3.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환수 의지는 있는가? 15

- 1)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불법 반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난 문화재를 120개 협약국에 협조요구한 것은 몇 건인가?
- 2) 한건도 협조 요구하지 않은 것은 협약을 적절하게 활용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 3) 조속히 협약 체결 이후 불법 유출된 문화재 목록을 만들어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널리 공지하고 문화재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

- 1) 충남 태안 대섬과 마도유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평가액보다 보험평가액이 높은 이유는?
- 2) 어떤 평가액이 맞는가? 문화재 평가 심의서를 검토한 결과, 유물 평가액을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겼다는 점에서는 문화재청의 명백한 잘못임
- 3) 유물이 대량이라는 이유로 기형(종류)별로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단가를 매긴 것은 발견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행위임.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대한 권위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주먹구구식 평가행정을 하면 안 됨. 답변 바람

<나 경 원 의원> 19

【서면질의】

1. 광희문 접근성 제고 및 활용방안 강구, 관광콘텐츠로의 개발에 대한 견해는? 21

<이 철 우 의원> 23

【서면질의】

1. 문화재 보수 비용 거품 심각, 수십년간 국고 누실 의혹 25

- 1) 문화재 수리공사별 표준품셈표를 1974년 3월에 만든 후 그대로 사용 중.

(’94년도에 미미한 개정) 46년째 그대로 인 이유가 무엇인가 ?

- 2) 1974년 당시에는 재료가 원상태, 다듬기 작업도 전부 수작업, 1990년대부터 문화재 수리 보수도 기계화, 원재료도 크기와 표면이 1차 가공되어 나오고, 다듬기도 기계화작업, 따라서 표준품셈표 만큼의 인력이 필요가 없음. 표준품셈표를 그대로 사용해 인건비 거품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

- 3) 본 위원 계산결과 치목하는 목수 인건비가 한달에 수천만원으로 계상 승례문 등을 제외한 문화재 보수 수리 대부분이 기계장비를 이용하므로 근래 1~20년 동안 이렇게 부풀려진 인건비로 나간 돈이 천문학적일 것. 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4) 현재 문화재청에서 표준품셈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중으로 알고 있음

① 연구 용역이 내년 말까지로 아는데 빨리 당겨서 현실화 할 것

② 향후 지금 표준품셈표를 개정 표준품셈표와 비교하고, 그에 따라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과다지출된 인건비 규모를 산출하여 제출할 것

2. 해외문화재 환수, 정부는 왜 미온적인가 27

- 1) 그동안 우리가 환수한 국외문화재는 8,160점. 대부분 기증(5,848점) 정부가 능동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간 협상과 정부 구입. 정부간 협상은 1,728점 정부구입은 338점으로 총 2,066점(25%) 국외문화재 환수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는데, 문화재 주무부처로써 국민께 하실 말씀은?

2) [조선왕조의례 반환 관련]

- 9월 30일,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국회가 조선왕실의례 등 한국도서 반환을 위한 조약인 ‘한일도서양도협정’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 올해 반환받기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이 통과시키기를 기다린다’는 소극적 자세인데, 올해가 국권침탈 100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연내 반환을 추진해야 할 것.
- 정부의 문화재 총괄부처인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대한 대책은?

3) [조선왕실의례 반환 관련]

-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왕실의례 반환 시 적정한 보관처로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 반면 평창군의회는 제자리인 ‘오대산사고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주장.
- 문화재청의 입장은?
- 2006년 7월 반환돼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관련, 문화재청이 반환 당시 “연구조사를 위해 3년간 임시보관 후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지? 현재 3년이 지났는데 이를 오대산 사고로 돌려주실 것인지?

4) [외규장각도서 반환 관련]

- 프랑스 정부가 자국법 위배로 곤란하다는 ‘영구대여’를 굳이 우리가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지난 4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22개국과 공조해 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 5)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미온적이고 무능력하자 민간단체가 나섬.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환수운동, 외규장각도서 반환 소송 등 민간이 주도한 활동에 정부 지원 전무.
- 최근에서야 민간단체 지원 시작(2007~9년 3천만원, 2010년 1억5천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은?

- 6) 현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직조차 없음. 내년에 행안부로부터 문화재 환수인력 6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환수대책팀을 만들 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3. 세계유산 활용예산 국고·기금지원 서울에만 24억 30

- 1) 문화재청 직접 관리 세계유산의 활용예산 집중된 현상의 원인
- 2) 세계유산 관리주체별 홍보활용예산 차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3)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용) 기획 주체에 대한 청의 입장

4. 한국 세계유산 홍보 부족 32
 - 1) 유네스코 홈페이지 내 우리나라 세계유산 홍보 미흡
 - 2) 세계유산 관련 다자간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 3) 문화재 보수현장 안내게시판은 현재 간단한 사업명, 사업자, 기간 등만을 개조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수내용과 관련기준을 함께 게시할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제고 효과가 기대,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은?
 - 4) 세계문화유산 전문 여행가이드 현황과 제도
5.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건설사업자 부담 과다와 관련 34
 - 1) 사업시행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 2) 매장문화재 발견사실을 은폐하거나 파괴, 도굴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제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3) 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므로 외국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직접 발굴 또는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6. 10대 40.4%, “문화유산 관심 없다” 35
 - 1)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10대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문화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 문화재청이 학교에서의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7.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해결방안 필요 42
 - 1)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기능과 재원을 '05년부터 지방이양. 2004년 시·도지정 문화재는 6,135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7,134건으로 늘어났음. (보존관리 대상 및 범위 확대) 반면, 동기간에 보수비 국고지원은 410억원에서 343억원으로 줄어듦. 이는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는지?
 - 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예산집행이 해마다 50% 전후에 머물다가 작년에 오르긴 했지만 67% 수준임. 집행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문화재 보수·정비는 균등(분권) 배분보다는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문화재 훼손방지가 어려워 보임. 대안이 있으신지?
 - 4) 문화재 실무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

〈조진형 의원〉 45

【서면질의】

1.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 필요하다 47
 - 1)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
 - 2) 홍보프로그램 개발, 활동역량 강화, 문화유산 소장자 등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2005년 이후 도난당한 문화재 회수 미흡 48
 - 1)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에는 사진이나 특징이 없음. 문화재 도난 시 사진자료 등이 없는 경우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 2)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불법적인 문화재 매매방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3)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검·경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문화재전담반 운영을 통해 철저한 사범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돼야 49
 - 1)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가 낮아진 이유?
 - 2) 목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의 특수성에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3) 현재 일괄 추진 방식인 문화재 방재사업 추진대상 선정방식을 화재위험지수를 개발, 문화재별 위험도 등급을 분류해 방재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4. 고미술품 감정의 신뢰성 제고 대책 강구해야 50
 - 1) 중국 지안에서 도굴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지? 고구려벽화를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2) 해외문화재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3) 고미술품에 대한 진위와 가격감정을 문화재청과 고미술협회에서 분리하여 담당토록 한다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4) 20~30%의 파편으로 도자기의 원형 복원이 가능한지? 이러한 도자기가 전시되고 도록에 올라가는 것은 한국 미술 역사의 왜곡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진 성 호 의원〉 53

【서면질의】

1. ‘한국의 집’ 국내·외 확대로 고품격 문화보급 필요성 55
 - 1) 한국의 집을 국내 및 해외에 추가 설치·운영하여 명품 전통문화를 세계속에 알리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끊이지 않는 문화재 도난 및 불법 거래 55
 - 1) 도난문화재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 또, 비지정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도난 당하는 이유? 문화재 해외 밀반출을 통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풍토 때문은 아닌지?
 - 2) 문화재 도난방지 대국민 홍보 및 문화재사범 단속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조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3. G20 세계정상회의에 문화재 활용행사 추진 방안 강구 56
4. 문화재청을 포함한 정부의 해외문화재 환수 노력 총체적 부실 57
 - 1) 일본 총리의 조선왕조의궤 반환의사 이후 정부차원의 구체적 움직임은?
 - 2)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회 임시국회에서 도서양도협정 조약을 이번회기에 처리 하지 않기로 보도된 바(9.30), 문화재청은 일본 정부에 공식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 3) 지금부터라도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왕조의궤가 반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4) G20 세계정상회의에서 프랑스가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선언할 지에 대한 견해는?
 - 5)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관련부처와 협의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G20 정상회의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람
 - 6) 문화재 환수 담당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비해 문화재 환수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5. 민홍규 자화자찬에 놀아난 문화재 전문가, 자문도 검증도 없었다 59

- 1) 국새제작 시 문화재청과 협의나 추천의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위원들이 참여했다면 참여한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함 동의하는가?
- 2) 이분들이 제대로 된 자문만 했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4)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조사해서 문책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함
6. 문화재위원 제재방안, 무형문화재 지정과정,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원 관련 60
 - 1) 지정되었던 보물이나 국보가 가짜로 판명되어 지정해제 되었는데, 지정당시 심의자인 문화재위원들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가?
 - 2) 국가의 문화재를 잘못 지정했다면 문화재위원 자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또 책임을 묻는 전례를 만들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3) 수상이나 소장 공모 시 심사자가 후보자의 지도교수라면 이의제기를 했을 것임. 이에 대해 어떤 대처를 했는가?
 - 4) 2004년 문화유산상 논란 당시 수상자는 문화재위원장과 3개 분과 겸임 위원이었는데 문화재청은 논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이런 행정에 대한 해명과 대책은?
 - 5) 소목장 공모에서 소반장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닌지?
 - 6) 금속활자장 심의에서 조사위원이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이런 사실을 왜 제대로 파악 못했는지?
 - 7) 2000년~2010년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이의제기 10건이 받아들여지는 등 보유자 심의과정에서의 의혹과 논란을 방지할 방안은?
 - 8)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석사과정이 있는지?
 - 9) 학예직 특별채용 자격이 석사이상인데 2008년부터 지원요건이 변경된 이유는?
 - 10) 1999년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입시요강의 졸업생 특전이 사라졌는데 입학생들의 신뢰문제는?
 - 11)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12) 국가에서 설립한 특수목적학교 졸업생들이 일반대학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타 대학을 졸업하고 전통문화를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통문화학교 대학원으로 오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지?

<서 갑 원 의원> 65

【서면질의】

1. 전수조교 검증절차 강화 67
 - 1) 중요무형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인가?
 - 2) 중요무형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들 중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 3) 2007년 전수교육 조교 1명 등록해제 사유는?
 - 4) 2004년 전수조교의 구속수감 후 석방 시까지 전수조교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사유?
 - 5) 2007년 이후 신규 임명된 전수조교 인원은? 임명된 전수조교는 물론, 앞으로 임명될 전수조교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2. 성매매 직원에 ‘불문경고’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견책’, 경고 68
 - 1) 문화재청 직원 중 성매매, 금품수수, 음주운전 자 등에 대해 불문경고나 경징계에 그친 사유

<김 부 겸 의원> 71

【서면질의】

1. 군사시설 발미로 토성·산성 파괴 73
 - 1) 국방부의 토성/산성 훼손 파악조차 못함. 토성/산성내 군사시설 현황이 5개소가 맞는지?
 - 2) 국방부의 관방유적 훼손에 대해 파악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 3) 문화재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이 없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령 개정 노력을 해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은?
2. 천연기념물 347호 제주마, 순수혈통 사라졌다 74
 - 1) 지정된 제주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여 순수혈통마를 가려내야 함
 - 2) 제주마 관리지침의 허점인 2-3세에 대한 인증방법을 개선, 성장기간 연령이 되었을 때 검증을 거쳐 지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

- 3) 현재 제주마 관리지침 13조 몸높이 조항을 개정하여 월령을 명시하고 표준편차, 최고치, 최저치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관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 병 완 의원〉 75

【서면질의】

1.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 미비 77
 - 1)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 2) 화재 등에 대비한 정밀실측조사를 실시하면서 화재보험 가입을 방치한 이유는? 문화재청의 행정행위가 서로 모순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3) 지자체 소관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인데 제도적 개선 방법은?
 - 4)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만이라도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면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매장문화재 관리 일원화 78
 - 1) 매장문화재는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지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2) 매장문화재 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원화하려는 이유는?
 - 3) 각 지자체에서 매장문화재의 보관 및 관리청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중단을 촉구 하는데 왜 문화재청은 밀어붙이려 하는가?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업데이트 지연 79
 - 1) 문화재 보수정비·복원사업은 문화재청을 통해 국비가 지원되는데, 문화재청은 복원 사업 후 모습이 달라질 것을 예상 못했는지, 아니면 방치했는지?
 - 2) 문화재 관련 사진 등의 업데이트를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체결한 헤리티지뷰 구축 사업 활용에 대한 의견은?
 - 3) 문화재 관련 사진 등 DB의 업데이트 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게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 장 선 의원> 81

【서면질의】

1. 선 반구대암각화 보존, 후 대체수원 확보 83
 - 1) 반구대암각화의 보전을 위해 먼저 수위를 낮추어 훼손을 방지한 후 대체수원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 문 순 의원> 85

【서면질의】

1. 문화재청 송례문 화재로 받은 78억 날리나 87
 - 1)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구축사업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스템에 78억의 국고를 투입한 것은 국고 낭비임. 현재까지도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자동영상추적장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 2)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만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계속 연장해줘도 되는 것인지? 그간 취한 조치와 향후 조치계획은?
2. 월정교 복원공사 현장, 문화재 전문수리공의 노예계약 문서 발견 89
 -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현장 실태조사를 했는지? 무형문화재의 연령이 심각하게 노령화 돼 있어 기술이 단절될 위기임.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야 함
 - 2) 제정된 법에서 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나눈 특별한 이유는? 제정된 법도 불법하도급 현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문화재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문제가 심각함.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평등한 조건에서의 공사 참여가 바람직함. 이에 대한 생각은?
3. 민주화와 천주교의 성지, 명동성당마저 재개발 되나 92
 - 1) 명동성당 주변 재건축과 관련, 9월 발굴제도과에서 실시한 조사가 무엇인가? 실제 공사가 실시되는 곳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 공사지역이 아닌 성당 좌우 기초부에 대해서만 확인했다면 이는 형식적 조사가 아닌가?

- 3) 명동성당 재개발건이 이번 달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 되는지? 이러한 소문이 왜 나는지 답변 바람.
- 4) 어떤 이유인지 명동성당 재개발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는데 다른 압력을 받았는지?
4. 약탈문화재 환수 전문가 그룹 조직해야 93
 - 1)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해 ‘약탈문화재 환수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김 창 수 의원> 95

【서면질의】

1. 문화재 반환협상,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됨 97
 - 1)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이 아닌 ‘영구임대’로, 일본의 경우는 ‘궁내청’에 있는 문화재 몇 건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진정한 문화재 환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관리 및 보존처리 인력 수급 시급해 97
 - 1)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재 보존처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유물 방치 및 손상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3.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중 박물관/연구소 취업생들 대부분 비정규직 100
 - 1)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비율이 높은 이유는?
 - 2)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원 개설로 학생의 수요나 졸업생 취업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해양문화재연구소, 4대강 주변 문화재 날림으로 조사 100
 - 1) 수중조사를 41일 만에 27개소 조사했는데 해양조사를 이처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지?
 - 2) 처음부터 수중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2009년 6월에야 실시한 이유는?
5. 유물분포지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조사하지 않고 불법공사 강행 102
 - 1) 금강 5공구 지역은 지표조사 결과 표본조사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무단으로 공사를 벌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신경써야하는 곳에서도 이 정도라면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하겠는가? 4개강 사업 강행을 위해 눈감아 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6. 4대강 주변 노지 리모델링 대상부지/골재 적치장 졸속 문화재 조사 우려 102
 -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구간 중 정밀발굴조사(12) 실시 예정지역에 공사시행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골재 적치장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의 조사결과 유적 보존 조치가 결정된 곳이 1곳도 없음. 졸속으로 조사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서울 소재 궁, 종묘, 외국관광객 위한 문화재해설사 다양화해야 103

- 1) 현재 문화재해설사 현황은?
2)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의 문화재해설사 중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동남아어해설사가 없는데 충원이 없는 이유는?
3) 문화재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은?

8. 비지정 문화재 관리 철저한가? 104

- 1) 비지정문화재가 도난의 주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은?

<김 을 동 의원> 107

【서면질의】

1. 해외 약탈 문화재에 대한 피해국가 국제공조 적극 주도해나가야 109

- 1)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협력회의” 관련
(1) 불법유출, 약탈당한 문화재가 10만점이 넘는데 외규장각도서 및 일본 궁내청소장 조선왕조실록만을 반환 촉구한 이유?
(2) 카이로선언문 초안 관련, 도난이나 약탈에 의한 불법반출 문화재와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당시 이전된 문화재의 차이?
(3) 도난, 약탈보다 오랜 식민지배와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문화재 반출 범죄가 더욱 악질적인 국제범죄행위가 아닌지? 문화재청의 견해는?
(4) 페루가 지적한 문화재 불법유출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국제규범 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그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하고 있는지?
(5) 나이지리아가 지적한 '70년 유네스코협약과 '95년 UNIDROT협약의 문제점 내용은?
(6) 참가국들이 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연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7) 적극적인 약탈 문화재 피해국가 국제공조 활동 전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8) 이와 관련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전담부서 및 인원·예산 확충계획은?
2.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지 훼손 심각, 문화재청 뭐하나 112
- 1) 문화재청 차원에서 중국 내 고구려, 발해유적에 대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 2) 문화재청이 중국 내 고구려, 발해유적에 대한 훼손이나 난개발 정보를 확보한 것은?
 - 3) 문화재청 차원에서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잘못된 점은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운 점은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광화문 단축 복원 의혹 말끔히 해소해야 113
- 1) 광화문 복원이 G20 정상회의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단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 복원 공사 시 흙의 건조기간이 충분치 못해서 목재가 썩고 부식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4. 문화재청 공식 영문 홈페이지 관리소홀 114
- 1) 문화재청 영문홈페이지 문화재 영어표기나 설명자료에 대해 전문가 검수과정이 있었는가?
 - 2) 한글홈페이지에 비해 영문홈페이지의 자료 업데이트가 늦으므로 즉각 업데이트와 수정 바람.

〈이 용 경 의원〉 115

【서면질의】

1. 4대궁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117
- 1) 4대궁 종합경비시스템과 관련,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3D영상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후 계약대로 보수되었는지? 보수완료 시점은? 무상유지보수 기한도 최종 완료시점으로 연기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2) 사업내용 중 관제센터용 IT 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차라리 반납하거나 다른 곳에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 3) 계약 당시 제안된 선진사례 시찰이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실시하지 않았다면 애초 계약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
2. 과도한 민간의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118
- 1) 과도한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거나 발굴 자체를 국가에서 대행해 주는 등의 장기적인 제도개선¹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문화재보호기금을 이용하거나 발굴관련 기금을 신설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3.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의 비효율적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19
- 1) 감정실적이 많지 않은 공항은 비상근 감정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해당 공항 출국자에 반출문화재를 사전신고토록 하면 비상근 감정관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국가지정문화재 졸속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120
-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검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상당 수 훼손이 발견됨. 정기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혹시 재검사 실시하였는가?
- 2) 현장조사를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했다면 제대로 점검 할 수 있었겠는가? 문화재 정기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은?
5.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전승대책 필요 121
- 1)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길 우려가 있는데 제대로 전승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은?
- 2) 무형문화재의 도제식 교육을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통해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았는지?
- 3) 제와장이 판로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수 시 전통기와 사용을 권고하면 판로가 확대되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의견은?
6. 문화재매매장부, 내용검사가 중요 122
- 1) 매년 초 실시하는 문화재 거래상들의 장부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검인하고 있는지?
- 2) 문화재청의 검인 지침이 없는데 그렇다면 매매업자들이 성실히 신고하였을 것이라 보는 것인지? 문화재청은 문화재 거래실태를 알고 있는지?
- 3) 문화재청에서 매매장부 검사지침과 검인 내용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 거래내용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실시를 통해 장부대로 매매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지자체 보조금 사업, 집행률도 낮고 관리도 안 되고 123
-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적절히 집행되지 못함.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8.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방재과 설치 필요 124
- 1)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는 분명히 다르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문화재 방재’ 분야 연구팀을 만들어 문화재 방재에 대한 특화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 선 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1. 구체적인 국외반출 환수대상 문화재 목록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환수가 안 됨. 먼저 충분한 고증을 통한 환수대상 문화재를 파악해야 함.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는 대부분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되어 그 유출 경로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외국 기관의 현황 조사 비협조(외국 기관은 우리나라가 해당 기관의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 후, 우리나라가 환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음)로 유출 경위나 약탈 여부를 규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문화재청은 유출 경위, 약탈문화재 여부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여 환수대상 목록을 작성하고자 「국외문화재 출처조사」를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계속 실시하면서 전문가의 충분한 고증을 거쳐 환수 대상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강 승 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1. 도난에 취약한 개인 소장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적극 관리 필요

1)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도난에 대한 취약성이 더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 사진, 목록 등 문화재 정보가 잘 갖추어지면 도난 시 회수 확률이 높고, 거래가 어려워 도난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되므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찰('02~'09년) 2,254개소 110,229점 조사 / 전체 3,126개소 중 72%
- 서원, 향교, 문중, 고택 등('04~'09년) 151개소 75,798점 조사

2) 지정문화재에 비해 도난에 더욱 취약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은 조사 기록화 사업 완료 후, 소장한 문화재의 중요도, 도난 취약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인 소장자들에게 도난대책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비지정문화재에도 첨단 도난경보시설 신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 문화재의 종합적인 도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할 것임

- 최근 5년간 전체 문화재 도난 133건 3,794점 중 비지정문화재가 105건 3,641점으로, 건수 기준 79%, 점수기준 96%로 비지정 전적류 문화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진, 목록 등 문화재 정보가 잘 갖추어지면 도난 시 회수 확률이 높고, 거래가 어려워 도난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되므로, 비지정문화재 조사 기록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실태파악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소장자로 하여금 사진, 목록기록 유지 및 박물관 위탁 보관을 유도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청 사범단속 전담인력은 2명으로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경찰청에 문화재전담반이 현재 3곳에 있으나 4곳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재사범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전국민적 제보와 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도난 도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08년 TV 20회, '09년 TV 20회, '10년 TV 20회

담당부서	정책총괄과/무형문화재과/보존정책과/유형문화재과/활용정책과
담당자	원성규 사무관/박관수 사무관/최장락사무관/오춘영 연구관/유건상 사무관
연락처	042-481-4698/4691/4838/4686/4741

2. 민간단체 지원 지난 7년간 9배 증가

1) 민간단체 지원 건수와 금액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므로 일회성 사업이나 직접수행 가능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원칙 없는 행정은 없어야 할 것임

- 우리 청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의 전문성 및 경험 활용(비지정 문화재 조사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자율적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무형문화재 전승 단체) 등을 위하여 민간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 불교문화재·사찰벽화 일제 조사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사업이나 직접수행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별로 중간점검 및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과도한 사업 위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2) 민간단체지원이 일부단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후 감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일부단체에 편중되는 것은 비지정문화재 조사 사업(불교문화재 연구소, 정보문화재연구원), 남북교류사업(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과 같이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을 다른 기관(단체)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문 인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단체가 추진하여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재단 등은 문화유산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중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수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정산 점검 및 정기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감사를 통해 지도, 감독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제도적인 정비방안(예산과목 변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성 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고기석 사무관
연락처	042-481-4640

1. 산하기관들 인사 철저 필요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석의 이유가 무엇인가?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서 외부민간인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개방형계약직고위공무원으로서 임기가 정해진 직위입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공석이었던 이유는 전임 소장의 임기가 '10.7.5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신임소장 선임을 위한 여러 절차(개방형직위 공모 및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역량평가, 행정안전부 인사심사 등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석 중이었던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0. 10. 8일자로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임명절차 (세부 추진 일정 : 별도 제출)

- ① 시험시행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선발시험위원회 구성(7인 이상) ⇒ ④ 선발시험(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 ⑤ 문화재청장에 추천(복수) ⇒ ⑥ 역량평가(행정안전부 주관) ⇒ ⑦ 행정안전부 인사심사 ⇒ ⑧ 계약체결

2)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선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수습책 또한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알고 있는지?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고위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선발시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면접위원(7명) 중 1명이 응모자 중 1인의 지도교수인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동 문제점에 대한 인터넷 일부 언론보도(2010.6.15)를 접하고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바로 다음날(2010.6.16) 행정안전부(고공단정책과, 심사임용과)와 협의한 결과, 면접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재면접을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제2차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1차 선발시험위원회 적격자 순위와 면접위원을 전원교체하여 실시한 제2차 선발시험위원회 적격자 순위는 동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소장 공석인 이유가 공모당시 투명하지 못한 잡음으로 지원자 중 한명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공모 응시자 중 2명은 내부인사이고 외부인사 1명은 건축사무소 대표라고 알고 있는데 1차 선발자의 대학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심사과정 의혹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는지?

-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지도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면접위원 중 1명이 응모자 1인의 지도교수인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2010. 6. 15일 인터넷 보도(문화저널 21)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동 내용은 공모까지 절차는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으로 공모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렇게 되자 26일 같은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만 일부 교체한 가운데 재심사를 한 것이 맞는지? 심사위원단만 일부 바꾸고 재심사 한 것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아닌지? NGO에서는 이런 재심사 과정을 “춘극”이라 혹평하였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모집공고 후 3명(외부인사 2명, 내부인사 1명)이 응모하였고, 2010. 6. 10일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청은 문화재연구소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위원 구성 시에 우리나라 사계를 대표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외부위원으로 전원(7명) 위촉하고, 1~2인의 면접위원에 의해 평가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채점 방식 채택 및 투명한 진행을 위해 회의 전 과정 속기록 작성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 면접시험 후에 시험위원 중 1인이 응시자의 논문 지도교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2010.6.16), 재면접을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면접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1차 공고 시 응모한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다시 개최(‘10.7.22)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재공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재공모는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1명도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금번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공모 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임용절차 중 ‘행정안전부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심사도 하지만 임용절차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서 보다 폭 넓은 심사를 하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홍두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0

2. 문화재청, 승례문 소실 후 아직 정신 못 차려

- 1) 승례문과 같은 목조 건축물은 발화된 지 10분만 지나면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발화·확산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그런데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현황을 조사한 바, 여전히 방재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①소방차가 50m 이내 접근 불가 20개소, ②방염처리가 안된 곳 53개소, ③산림 인접 문화재 중 방화선 미구축 20개소, ④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 90개소임. 왜 아직도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이 이렇게 미흡한가?

- ① 소방차가 50m 이내 접근 불가 20개소
- 소방차가 50m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국가지정목조문화재 20개소에 대하여는 소방차가 출동할 때까지 자체소화활동이 가능(40분이상)할 수 있도록 각종 소화장비(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총 등) 설치를 완료하였음.
 - 소방차의 진화활동 범위는 자체소방호스 길이가 25m로, 부족 시에는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진화활동이 가능함 (최대 소방호스 10본 탑재)
- ② 방염처리가 안된 곳 54개소
- 목조문화재 점화 지연을 위한 방염처리 사업은 1984년부터 금년까지 총 3,343동 예산 지원함.(1회 도포시 6년간 유효)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성능실험한 결과 ‘다이메폭스’가 타 약제에 비해 단청과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1984년 이후 목조문화재 방염처리용으로 사용함
 - 그러나 다이메폭스도 단청에 백화현상 등 일부 문제점을 유발하여 2009년부터 사용 중지하고 단청이 없는 부분에만 방염처리 중
 -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방염약품의 개발을 위해 방염제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통과 약품이 없어 단청집에 대한 방염처리는 못하고 있음
 - 검정기관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시험약품 : 불카누스(극동방염), 21C 안타네(유진텍21), MR-001(무량), KS.F.G (이너아트테크), 칼라마스터Ⅱ(제일캠), KD-500(동승정밀화학), DS-120S(동승정밀화학)
 -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완벽한 방염제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민간차원에서 개발한 통과약품이 안 나오면 국가 R&D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방염제 미처리로 인한 화재 취약점은 경비활동 강화, 화재 감지 장비 운영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것임.

③ 산림 인접 문화재 중 방화선 미구축 20개소

-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협조를 받아 방화선구축사업을 '08년 범어사대웅전 등 66개소, '09년 정수사법당 등 119개소를 완료하였고, '10년 청룡사대웅전 등 79개소를 추진중에 있음.
- 미추진 개소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11년도에 실시할 계획임.

④ 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 90개소임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개소중 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은 중요 목조문화재가 주로 산지에 위치한 사찰에 소재하기 때문임
-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이란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체소화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난방지설비, 소화시설(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총, 이동식소화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음.
(법정 진화 물탱크는 20분이나 주요문화재에 대해서는 40분 이상 설치하였음)

2) 낙산사, 숭례문 화재 이후 종합방재대책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재대책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청은 숭례문화재('08.2.10) 이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고 내·외부적 화재요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합방재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08~'12)
 - 사업예산 : 5년간 2,057억원 투입계획, '10년 현재까지 1,183억원 투자
 - 사업대상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475건(국보 150, 사적 170, 중요민속자료 155)
 - 추진실적 : 국보·보물 150건 완료, 기타 문화재 34% 구축
 - 중요목조문화재인 국보, 보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연차적 사업추진 중
 - '08~'09년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50건(숭례문 제외) 완료
 - '10~'12년 :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 추진 중
 - 사업내용 : 종합방재시설(방법·경보·진화) 구축, 안전경비인력 배치(24시간) 등
- 당초의 5개년 계획대비 현재 55%수준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의 한계(인력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는 완료하였음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됨.
- ※ 종합방재대책 추진 이후 5건의 방화 사건을 경비인력이 사전 제압한 성과 거양

3) 2008년 11월부터 목조문화재에 방염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조속히 적합한 방염제를 찾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적당한 방염제를 찾지 못하고 중요 목조문화재를 화재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존 방염약품이 단청 부분에 백화현상을 유발하여 단청 부분만 2009년 공사 중지하고, 현재 단청이 없는 부분에는 방염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방염제 도포가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기 하지만, 여러가지 방재대책 중의 하나임.
- 화재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경비인력 배치 등 종합방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므로 방염제 도포는 시간을 두고 완벽한 약품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향후 1년 내 민간 차원에서 개발 실패시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

4) 조속히 방재처리가 안된 54개 목조문화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현재 방염 처리가 안된 54개에 대해서는 방염제 도포가 불가능한 단청 부분을 제외하고 조속히 방염제를 도포토록 하겠음.
- 아울러 단청 부위에 대한 방염제 미처리로 인한 화재 취약점은 24시간 경비인력 배치, 방재시설(방법·경보·소화설비) 구축, 방화관리자 선임, 안전점검 실시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음.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환수 의지는 있는가?

1)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에 불법 반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난 문화재를 120개 협약국에 협조 요구한 것은 몇 건인가?

- 우리 청에 도난 신고 접수된 문화재에 대하여 120개 협약국에 협조 요구를 한 적은 없으나, 협약국 대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동 협약에 근거 국제사회에 협조요청한 사례 : 2개국(페루, 일본)
- 해외로 나갈지도 모를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우리 청은 협약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인 인터폴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조수사하는 방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국외에서의 유통이라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거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도난된 중요문화재 29건(국보 1건, 보물 9건, 시도지정 19건)을 인터폴에 공개수배('10.9월)

2)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가 없기 때문인가? 협약에 가입한 1983년 이후 반출된 문화재만 적용된다지만, 20년 동안 한번도 유출이 없어서 응당 해야 될 도난통보를 하지 않은 것인지? 협약을 적절하게 활용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 '68년부터 국제공항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는 등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 또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실태 파악시 일제강점기 등 혼란기의 불법적인 반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지금이라도 속히 협약 체결 이후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 목록을 만들어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널리 공지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재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그렇게 하겠는가?

- 국내에서 도난된 것으로 불법유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중 가치가 큰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목록화하여 동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외 소재 문화재 실태파악 시 우리 청에 도난 신고 접수된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인터폴 공개수배 문화재의 숫자와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
담당자	장경복 서기관/이철한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3 / 061-270-2042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충남 태안 대섬과 마도유물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유물의 평가액보다 더 많은 보험평가액을 달고 유물이 대여된 경우가 태반임. 보험평가액이 유물 평가액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일종의 평가 하극상인가?

- 유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매장분과 문화재위원,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등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유물에 대하여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시와 타 기관 대여를 위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평가시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견신고된 유물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유물이 과학적 보존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차후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의 평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시에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유사 유물을 매입하는 금액에 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둘째, 평가의 목적이 다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등 외부기관에 대여·전시 같은 경우 보험요율이 통상 0.2~0.4 %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어 유물의 가치(보험금액)를 지나치게 낮게 인식, 중요치 않은 유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금 책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실제 유물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2) 어떤 평가액이 맞는가? 적게 낸 문화재위원회인가? 아니면 과대 평가한 위원회를 비롯한 유물 임대박물관과 보험사 인가? 이에 대한 청의 입장을 밝힐 것. 본위원이 문화재 평가 심의서를 검토한 결과, 유물 평가액을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겼다는 점에서는 문화재청의 명백한 잘못임

- 발견유물의 가치를 평가 시에는 유물이 많을 경우 같은 유형별(형태, 크기, 양식 등이 비슷한 종류)로 분류하여 가치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종으로 분류된 유물은 형태, 완전성, 희귀성 등을 따져 개별 평가과정을 거치기에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하여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으로 분류된 유물들이 형태 면이나 완전성 등 여러 평가요소에서 차별성이 없거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일 또는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 평가액의 차이는 앞 1번의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견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누구라도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에 신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문화가 정착됨. 유물이 대량이라는 이유로 기형(종류)별로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단가를 매긴 것은 발견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행위임.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대한 절대권위와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먹구구식 평가행정을 하면 안 됨. 답변 바람

- 보상금 결정은 발견신고된 유물의 평가액에 따라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신고된 지역에서 발굴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유물의 가치평가액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 경 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최장락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8

1. 서울성곽의 전체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이 만들어져야 하며, 광희문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활용방안 강구함과 동시에 광희문 및 인접 성곽을 공원화하여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울성곽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 2월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성곽복원, 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기본계획에는 광희문 구간 성곽 내·외측으로 탐방로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성곽 유구가 없는 지역은 바닥 형상화 정비를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우리 청에서 서울시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 서울성곽 멸실구간 형상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 용역이 완료되어 서울시에서 광희문 주변 공원 및 탐방로 조성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청에 협의 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서울성곽(광희문)을 활용한 주제별, 코스별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하이스쿨페스티벌 같은 지역 축제와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 우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당자	김영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66

1. 문화재 보수 비용 거품 심각, 수십년간 국고 누실 의혹

1) 문화재 수리공사별 표준품셈표를 1974년 3월에 만든 후 그대로 사용 중.
(’94년도에 미미한 개정) 46년째 그대로인 이유가 무엇인가 ?

-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은 ’74년 최초 제정 후 ’86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변화되는 현장 여건 및 장비에 맞추어 ’05년부터 이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11년 용역완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부 완료된 항목의 품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동안 표준품셈의 현행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작업 등을 거쳐 문제점이 인식된 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 1974년 당시에는 재료가 원상태, 다듬기 작업도 전부 수작업, 1990년대부터 문화재 수리 보수도 기계화, 원재료도 크기와 표면이 1차 가공되어 나오고, 다듬기도 기계화작업, 따라서 표준품셈표만큼의 인력이 필요가 없음. 표준품셈표를 그대로 사용해 인건비 거품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

- ’90년대 이후 현장여건 및 작업공구의 발달에 맞추어 품셈개정 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는 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기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계가공이 가능한 현장에 대한 기계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계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1년 부터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일부 품에 대해 개정하고 전 공종에 대해 인력품과 기계품을 별도로 마련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품과 기계품을 구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 위원 계산결과 치목하는 목수 인건비가 한달에 수천만원으로 계상. 승례문 등을 제외한 문화재 보수 수리 대부분이 기계장비를 이용하므로 근래 1~20년 동안 이렇게 부풀려진 인건비로 나간 돈이 천문학적인 것. 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수리공사 현장에서 기계장비로 수리가 되었다면, 인력품과 기계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공사를 시행 및 감독한 발주청의 책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문화재청의 책임도 있을 것 입니다.
- 그 동안 문화재수리에는 감리제도가 없었으나 금번 제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중요문화재에 대한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철저한 공사의 관리·감독 기능이 생길 것입니다.

4) 현재 문화재청에서 표준품셈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중으로 알고 있음.

① 연구 용역이 내년 말까지로 아는데 빨리 당겨서 현실화 할 것.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18개 공종 209개 항목 중 완료된 공종은 없으나 실사 및 실연이 일부 완료된 항목을 중심으로 적용가능 한 품을 만들어 2011~20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품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2011년 우선조치
 - 209개 항목 중 실사가 완료된 147개 항목을 중심으로 적용가능 한 품을 금년내에 만들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보정작업을 거쳐 2011년 공사부터 적용
 - ※ 개정된 품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지속 보완
- 2011년 용역 완료 후 조치
 - 2011년 용역완료 후 나머지 62개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재수리표준품셈(기계품, 인력품) 209개 항목 2012년 개정 고시

② 향후 지금 표준품셈표를 개정 표준품셈표와 비교하고, 그에 따라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과다지출된 인건비 규모를 산출하여 제출할 것

- 현재 문화재수리표준품셈 개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품셈이 완료되려면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품셈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과거 문화재 수리공사 중 과다 지출된 인건비는 공사현장에서 인력품과 기계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과다 지출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일부 공사를 표본으로 하여 공사내역, 인건비, 투입인력 등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의 품셈이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2. 해외문화재 환수, 정부는 왜 미온적인가

1) 그동안 우리가 환수한 국외문화재는 8,160점. 대부분 기증(5,848점) 정부가 능동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간 협상과 정부 구입. 정부간 협상은 1,728점 정부구입은 338점으로 총 2,066점 (25%) 국외문화재 환수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는데, 문화재 주무부처로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 문화재 반환 문제는 국제법상 강제수단 미비로 정치적·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거나 구입, 기증 등 반환방법을 다각화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 특히 환수 주체별로 방법을 분석해 보면 정부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7,413점/92%/정부협상, 기증, 구입)가 민간단체를 활용한 문화재 환수(747점/8%/기증, 구입) 보다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 우리 청(문화재 환수정책)은 외교통상부(정부간 협상), 국립중앙박물관(구입, 기증), 국립문화재연구소(국외 실태조사) 등 유관부처가 상호 협력하는 한편, UNESCO, ICPRCP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문화재 환수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국내 활동 중인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조선왕조의궤반환 관련]

- 9월 30일,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국회가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 반환을 위한 조약인 ‘한일도서양도협정’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 올해 반환받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이 통과시키기를 기다린다’는 소극적 자세인데, 올해가 국권침탈 100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연내 반환을 추진해야 할 것. 정부의 문화재 총괄부처인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 8월 10일 일본총리 담화문에서 일본 측은 “조선왕조의궤 등 조선총독부 이관 도서를 빠른 시일 내 한국 측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일본 측도 조속한 반환을 위한 실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반환받기 위해 문화재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한일 실무협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가 일본의 국권침탈 100년 등 역사적인 해이므로 이번 문화재 반환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상징적 사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연내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문화재 반환의 자국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이 경우 일본 의회 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3) [조선왕실의궤 반환 관련]

-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왕실의궤 반환 시 적절한 보관처로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 반면 평창군의회는 제자리인 ‘오대산사고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주장. 문화재청의 입장은?
 - 이미 알고계신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잦은 전란으로 인한 왕실도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각 지방사찰 인근에 사고지를 두어 왕실의 도서들을 관리토록 했으나, 현재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요유물에 대한 보관·관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을 반환이 예상되는 조선왕실의궤의 보관처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왕실의궤와 같은 중요 조선왕실도서들은 모두 국가기관에서 보관·관리 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방의 4대 사고지에는 위와 같은 도서들을 보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4대 사고지에 있던 조선왕실도서의 원보관처는 사고지의 ‘전각’이나, 이 전각들은 문화재의 보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근 사찰에 보관하는 것은 원보관처의 보관이라는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 월정사와 오대산사고지는 4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 2006년 7월 반환돼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관련, 문화재청이 반환 당시 “연구조사를 위해 3년간 임시보관 후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지? 현재 3년이 지났는데 이를 오대산 사고로 돌려주실 것인지?
 - 2006년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47책은 연구완료(2009~2011) 후 검토하여 보관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선왕실도서의 보관처는 왕실유물의 효과적 보관·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외규장각도서반환 관련]

- 프랑스 정부가 자국법 위배로 곤란하다는 ‘영구대여’를 굳이 우리가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봄. 지난 4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22개국과 공조해 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환수의 기본원칙은 약탈, 불법반출 등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조건 없이 대한민국으로 반환받는 것입니다.
- 다만,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의 경우 19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우리청은 불가피하게 “외규장각도서의 영구대여 방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 특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형식적으로 ‘대여’이나 영구적으로 국내에 소장하는 방안으로서 ‘영구대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 우리청은 향후 한-프랑스 양자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외규장각도서 문제를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등 문화재 피탈국간 국제회의에서 국제여론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미온적이고 무능력하자 민간단체가 나섬. 그러나 조선왕조실록환수운동, 외규장각도서 반환 소송 등 민간이 주도한 활동에 정부 지원 전무.

최근에서야 민간단체 지원 시작(2007~9년 3천만원, 2010년 1억 5천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은?

-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는 2007년도이며, 문화재청은 일본, 프랑스 등 우리 문화재 보유국들이 자국법과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정부 간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재청은 2009년도에 3천만원이었던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을 2010년도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현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직조치 없음.
내년에 행안부로부터 문화재 환수인력 6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환수대책팀을 만들 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4월 국제법 및 문화재 환수 관련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재환수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5회를 개최하였으며,
- 향후에도 문화재환수 전담팀이 구성되면, 전담팀과 민간의 환수 전문가와의 상호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전문가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활용정책과
담당자	박희웅 사무관/이길배 서기관
연락처	042-481-4737/ 481-4745

3. 세계유산 활용예산 국고·기금지원 서울에만 24억

1) 문화재청 직접 관리 세계유산의 활용예산 집중된 현상의 원인

-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궁궐의 활용예산을 늘린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문화부, 서울시, 관광공사 등과 함께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궁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재원이 확대 투입된 것입니다.

2) 세계유산 관리주체별 홍보활용예산 차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우리청은 매년 유산별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세계유산 관리홍보 사업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 예산에는 창덕궁, 종묘 등 문화재청 직접관리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세계유산 관리홍보 예산 내에서는 지자체 소재 세계유산의 활용홍보 사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 2007-2010년간 세계유산 관리홍보 사업 지원비 및 사업내용

연도	총액	금액	해당 지자체	해당유산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2007	500	20	인천시	강화고인돌	○ 애니메이션 형식 강화고인돌 홍보 DVD 제작 (5분분량)
		30	전북	고창고인돌	○ 선사시대 고인돌 생활 체험 ○ 고인돌 홍보물 제작 및 방송, 언론 홍보
		30	전남	화순고인돌	○ 제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고인돌) 관계자 국제심포지엄 ○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고인돌 강좌

연도	총액	금액	해당 지자체	해당유산	사업내용
		60	충북	직지심체요절	○ 한국의 기록문화특별전 개최(미국) ○ 유네스코 기록유산 워크샵 개최
		130	제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세계자연유산 등재 홍보 및 기념행사 개최 ○ 세계자연유산 학술관련 행사 개최
		50	경남	해인사장경판전	○ 모바일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80	전남, 경남	남해안 공룡화석지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공룡화석지 재조사를 통한 보존대책 수립
		50	경북	안동하회마을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 학술조사 및 자료수집 ○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유사한 유산과 비교 검토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50	충북	중부지역 산성유적	○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정밀학술조사 ○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2회
2008	300	30	전북	고창고인돌	○ 고인돌 관리 및 홍보사진집 제작 ○ 고인돌 홍보관광안내판 제작
		30	전남	화순고인돌	○ 보호각 내 홍보자료 제작 ○ 선사생활 체험장 조성
		50	충북	직지심체요절	○ 한국의 기록문화특별전 개최(호주)
		50	제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제주 세계자연유산 글로벌 홍보 ○ 등재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개최
		50	전남	남해안 공룡화석지	○ 한국백악기 공룡해안 세계유산 등재 홍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50	경남	남해안 공룡화석지	○ 전문가 초빙 유산 홍보 교육 ○ 홍보물 제작
		40	경북	경주역사유적지구	○ 남산, 불국사 석굴암 홍보영상물 제작
2009	300	10	화순	화순고인돌유적	○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고인돌 워크샵 개최
		30	해남,여수, 보성,화순	공룡화석지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개최 및 홍보활동
		10	고창	고창고인돌유적	○ 고창고인돌 유적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10	강화	강화고인돌유적	○ 강화 고인돌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	합천	해인사장경판전	○ 해인사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10	고성	공룡화석지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
		20	청주	직지심체요절	○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샵 개최
		40	제주	화산섬과동굴	○ 제주 세계자연유산 써포터즈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경주	세계유산포럼	○ 세계유산 등재?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포럼 개최
		50	경주	한국의 역사마을	○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도	총액	금액	해당 지자체	해당유산	사업내용
		50	안동	한국의 역사마을	○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10	200	20	인천시	강화고인돌	○ 강화 고인돌 체험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사업
		50	경기	화성	○ 세계유산 포럼 개최
		20	전북	고창고인돌	○ 고창 고인돌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20	전남	화순고인돌	○ 화순 고인돌 선사마을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30	경북	한국의 역사마을	○ 한국의 역사마을 등재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	강원	조선왕릉	○ 영월 장릉 홍보책자 제작
		40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제주 세계유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 기획 주체에 대한 청의 입장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관련한 업무는 크게 세계유산 등재, 관리,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 ‘등재’업무에 대한 총괄은 문화재청이며 지자체의 긴밀한 참여 및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는 현행 문화재법령상 각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문화재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여러 여건상 관련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또한 세계유산 활용’의 경우, 우리청은 청이 직접 관리하는 창덕궁·종묘·조선왕릉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세계유산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자체 관리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한국 세계유산 홍보 부족

1) 유네스코 홈페이지 내 우리나라 세계유산 홍보 미흡

- 우리청은 그동안 미흡했던 유네스코 홈페이지 상의 우리나라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자료 및 링크자료 현황을 수시로 검토해 업데이트 및 추가 홍보자료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유산별 포토갤러리 사진 10개 이상 업데이트
- 기존 링크 사이트 점검 및 문제해결(유네스코 본부에 문의 필요)
- 유산별 링크 가능한 세계유산 관련 사이트 목록작성 및 유네스코 협의 후 유네스코 사이트에 링크 자료 추가

2) 세계유산 관련 다자간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 우리청은 세계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간 연계를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하회와 양동 마을의 경우 ‘역사마을 보존 협의회’를 이미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청은 앞으로 각 유산별로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유산 보존협의회’ 구성·운영을 확대해가고, 당해 ‘세계유산 보존협의회’를 보존관리·활용 등 전반 사항을 검토 심의하는 기구로 발전시켜 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포
담당자	김장규사무관
연락처	042-481-4870

3) 문화재 보수현장 안내게시판은 현재 간단한 사업명, 사업자, 기간 등만을 개조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수내용과 관련기준을 함께 게시할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제고 효과가 기대,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은?

- 문화재 수리 현장이 다양하여 정형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현재 문화재 수리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관계자의 실명, 연락처 등 필수적인 사항 외의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 사업 시행청인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 현장 여건에 따라 보수내용과 관련 기준 등을 게시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박희웅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7

4) 세계문화유산 전문 여행가이드 현황과 제도

- 현재 세계유산을 비롯한 각 지역 문화유산 해설사는 지자체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 선발, 일정기간 교육 후 문화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해설사들의 경우 지역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 관련 전문 해설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청 관리 세계유산인 창덕궁 및 종묘의 문화재해설 가이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언어별			총계
	영어	중국어	일어	
창덕궁	6	3	6	15
종묘	3	2	6	11

※ 위 자료는 순수 자원봉사자는 제외임.

탐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황권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1

5.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건설사업자 부담 과다와 관련

1) 사업시행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 매장문화재 원형보존 원칙과 개발사업자의 개발욕구 간의 상충관계를 해결키 위해 유네스코에서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 지나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보호 보다는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발굴비용을 부담케 하더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 첫째, 발굴허가 처리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바로 신청하고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변경(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으며,
 - 둘째,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대가의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1600-0064)를 개관하여 운용('09.5.12~)하고 있습니다.
 - 셋째, 조사기관의 설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신규인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조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조사원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선택 시 매장문화재 밀집지역을 피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디지털정보화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매장문화재 발견사실을 은폐하거나 파괴, 도굴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제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제도적으로 국가가 발굴비용을 지원하지 않고(소규모 발굴 제외), 발굴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무단 훼손 사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 연간 발굴비용이 공사규모의 확대 경향에 따라 증가하고 이를 모두 정부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이윤동기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적 측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므로 외국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직접 발굴 또는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 발굴비용 부담으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무단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 일본, 프랑스와 같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굴하는 방안과 민간법인이 발굴하되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지표조사·시굴조사 까지는 공공부분에서 담당하고 정밀발굴은 민간법인에게 맡기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원성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698

6. 10대 40.4%, “문화유산 관심 없다”

1)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10대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문화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4%의 10대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니, 청장으로서 초·중고 학생 대상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의 전국적 확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2) 문화재청이 학교에서의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 우리 청은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 재발견등 20개 문화유산방문교육 민간단체 및 21개 문화유산교육 으뜸 학교를 선정하여 문화유산 교실수업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교육과 교육콘텐츠 개발·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으뜸학교 운영실적 :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실적

연 도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실적
2006	- 초·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05~'06년)
2007	- 어린이교양도서 「어린이 문화재 박물관 I II」 발간 ('06.12) - 세계유산 교육 지침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번역발간 ('07.6)
2008	- 초등교사용 문화유산 교육 지침서 「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발간 ('07.12) - 문화유산 교양도서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 발간('08.6)
2009	- 교사용 문화유산 교육지침서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발간('08.12) - 문화유산 교실수업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발표('09.8~9) -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09.12월) ※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방문교육e-교실) 6개 콘텐츠 탑재, 교재발간(2권, 재미있는 문화유산수업II, 문화유산교육 이렇게 해봐요)

- 향후 학생들의 문화유산 관심제고를 위해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화유산교육 초등학교교과서 개발,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과정 및 재교육과정 운영 방안 수립,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문화유산 교육 으뜸학교 선정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유산영상콘텐츠를 보급하는 웹사이트인 헤리티지채널을 이용한 문화유산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연도별 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6. 30 현재)

□ 총괄표

연도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비고
		계	초	중	기타	
2006	한국의 재발견 등 8단체	215	169	38	8	
2007	한국의 재발견 등 11단체	394	317	45	32	
2008	한국의 재발견 등 16단체	507	405	74	28	
2009	한국의 재발견 등 17단체	531	387	88	56	
2010	한국의 재발견 등 20단체	277	192	43	42	
계		1,924	1,470	288	166	

□ 연도별 추진현황

○ 2006년도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비고
		계	초	중	기타	
서울	한국의재발견	26	23	1	2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30	20	9	1	
광주	대동문화	14	14	-	-	
대전	한밭문화마당	52	37	15	-	
울산	문화유산연구원	21	21	-	-	
경기	화성연구회	12	8	4	-	
경북	신라문화원 등 2단체	60	46	9	5	
계	8개 단체	215	169	38	8	

○ 2007년도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비고
		계	초	중	기타	
서울	한국의재발견 등 2단체	92	70	8	14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37	23	13	1	
광주	대동문화	30	30	-	-	
대전	한밭문화마당	42	36	5	1	
경기	화성연구회	52	38	6	8	
충북	예성문화연구회	36	35	1	-	
전남	목포KYC	25	21	3	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20	14	4	2	
경북	신라문화원 등 2단체	60	50	5	5	
계	11개 단체	394	317	45	32	

○ 2008년도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비고
		계	초	중	기타	
서울	한국의재발견 등 3단체	106	87	15	4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46	27	11	8	
광주	대동문화	30	30	-	-	
대전	한밭문화마당	39	34	5	-	
경기	화성연구회 등 3단체	94	75	13	6	
강원	원주시민연대	20	16	4	-	
전북	서민행동21	25	24	-	1	
전남	목포KYC	24	20	3	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22	18	4	-	
경북	신라문화원 등 2단체	88	68	12	8	
제주	제주문화지킴이	13	6	7	-	
계	16개 단체	507	405	74	28	

○ 2009년도

광역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비고
			계	초	중	기타	
서울 (3)	서울	(사)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10	-	-	10	
		(사)한국의재발견	35	27	1	7	
		위례역사문화연구회	26	14	8	4	
인천 (1)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58	33	18	7	
광주 (1)	광주	(사)대동문화	50	50	-	-	
대전 (1)	대전	한밭문화마당	35	30	5	-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16	14	2	-	
경기 (3)	고양	고양서민회	19	14	5	-	
	수원	(사)화성연구회	48	37	3	8	
강원 (1)	원주	원주시민연대	20	18	2	-	
충북 (1)	충주	충주전통문화회	43	31	12	-	
전북 (1)	익산	익산가정사랑학교	31	16	7	8	
전남 (2)	목포	목포KYC	29	24	3	2	
	순천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28	22	6	-	
경북 (2)	안동	안동문화지킴이	45	31	6	8	
	경주	(사)신라문화원	19	18	1	-	
제주 (1)	제주	제주문화재지킴이	19	8	9	2	
계		17개 단체	531	387	88	56	

○ 2010년도('10.6.30 현재)

광역시	지역	단체명	방문교육 실적(학교)				비고
			계	초	중	기타	
서울 (4)	서울	(사)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11	0	0	11	
		(사)한국의재발견	15	12	0	3	
		위례역사문화연구회	14	7	4	3	
		서울문화사학회	38	38	0	0	
부산 (1)	부산	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7	0	5	2	
인천 (1)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30	14	2	14	
광주 (1)	광주	(사)대동문화	19	19	0	0	
대전 (1)	대전	한밭문화마당	12	11	1	0	
경기 (3)	성남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12	9	3	0	
	고양	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8	5	1	2	
강원 (1)	수원	(사)화성연구회	15	13	1	1	
	원주	원주시민연대	6	6	0	0	
충북 (1)	충주	(사)충북파라미터청소년협회	3	2	1	0	
충남 (1)	보령	보령시불교청년연합회	4	1	0	3	
	익산	익산가정사랑학교	21	11	9	1	
전북 (2)	전주	시민행동21	6	5	1	0	
전남 (1)	순천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6	5	1	0	
	안동	안동문화지킴이	20	14	4	2	
경북 (2)	경주	(사)신라문화원	15	15	0	0	
제주 (1)	제주	제주문화재지킴이	15	5	10	0	
계			277	192	43	42	
20개 단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6. 3. ~ 2009. 12.
 - 사업내용 : 교육인적자원부 협의,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 지원 대상
 - 제1기('06~'07년) : 거여초등학교 등 27개교(초16, 중11)
 - 제2기('08~'09년) : 구남초등학교 등 20개교(초15, 중5)
 - 지원예산
 - 제1기('06~'07년) : 270백만원(매년 학교당 5백만원)
 - 제2기('08~'09년) : 400백만원(매년 학교당 10백만원)
- ※ 2006년부터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추진해 온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사업이 2010년부터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사업으로 변경되어 공모에서부터 사업결과 평가, 보고회 등 일체의 과정을 우리 청 주관으로 추진 하게 됨

□ 연도별 주요 추진실적

연 도	주요 추진실적
2006	- 초·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05~'06년) - 어린이교양도서 「어린이 문화재 박물관 I II」 발간 ('06.12)
2007	-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세미나 ('06.12 / 서울한국의 집) - 세계유산 교육 지침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번역발간 ('07.6) - 초등교사용 문화유산 교육 지침서 「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발간 ('07.12)
2008	- 문화유산 교양도서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 발간('08.6) - 교사용 문화유산 교육지침서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발간('08.12)
2009	- 문화유산 교실수업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발표('09.8~9) -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보급('09.12월) ※ 문화재청 홈페이지(문화유산방문교육e-교실) 6개 콘텐츠 탑재, 교재발간(2권, 재미있는 문화유산수업Ⅱ, 문화유산교육 이렇게 해봐요)

붙임 3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0. 4. ~ 2010. 12.
-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선정학교 : 총 21개교(초등학교 17, 중학교 2, 고등학교 2)
- '10년 예산 : 200백만원(국고 100%, 지자체경상보조)

□ 추진현황

-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운영계획 수립('10.3월)
-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모집 공고('10.3월) 및 선정(24개교, '10.4월)
- 2010년 으뜸학교 교사 워크숍 개최('10.4월)
- 2010년 으뜸학교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10.5월)
 - 21개 학교, 총 162백만원

□ 학교별 국고 지원현황

지 역	학교명	지원액	지 역	학교명	지원액
서울 (교육청)	서울대사범대부설초등학교	8,000	전북	백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8,000
	대방초등학교	8,000	전남	해남동초등학교	8,000
	독산초등학교	8,000	경북	용황초등학교	8,000
	창덕여자중학교	8,000		금장초등학교	8,000
부산 (교육청)	삼성여자고등학교	4,000		황남초등학교	8,000
인천	석천초등학교	8,000		선덕여자중학교	8,000
	교동고등학교	6,000	경남	곤양초등학교	8,000
대전	갈마초등학교	8,000		용남초등학교	8,000
경기	남양주동곡초등학교	8,000		인평초등학교	8,000
	황곡초등학교	8,000	제주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	8,000
충남	한내초등학교	8,000	계	21개학교	162,000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김성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4

7.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해결방안 필요

1)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기능과 재원을 '05년부터 지방이양.
2004년 시·도지정 문화재는 6,135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7,134
건으로 늘어났음. (보존관리 대상 및 범위 확대)

반면, 동기간에 보수비 국고지원은 410억원에서 343억원으로 줄어듦.
이는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는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월)에 따라 문화재 보수관리
기능과 재원이 '05년부터 지방(분권교부세)에 이양된 후 지방문화재 관리의 애로점이
증대되었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 대상 및 범위는 대폭 확대되나, 지원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빈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및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국고보조금 환원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교부세(15개부처 163개사업, 2004년) 중
국가로의 환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해당부서의 판단,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우리 청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기능을 국가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예산집행이 해마다 50% 전후에
머물다가 작년에 오르긴 했지만 67% 수준임.

집행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총액계상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비 확보 지연, 문화재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 및 보수범위 최소화 원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 하지만, 그간 설계승인절차 간소화('03년), 사전통지 제도 도입('05년), 국비 우선사용
지침 제도화('09년) 등의 실집행률 개선 노력으로 '06년 41.7%에서 '08년 50.1%, '09년
67.5%로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 특히, '09.5월에는 설계·시공 분리(단계별 사업추진) 등을 위한 “실집행 제고 추진지침”을
마련·시행하였고, '10.5월에는 이월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침을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주기적 집행점검 및 현지점검·지도 강화를 실시하여, 앞으로
실집행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보수·정비는 균등(분권) 배분보다는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문화재 훼손방지가 어려워 보임. 대안이 있으신지?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상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 수 및 자치단체 재정력에 근거한 균등(분권) 배분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현 제도 내에서는 문화재 훼손을 적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는 국가, 지방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문화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청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기능을 국가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당자	류시영 사무관
연락처	041-830-7822

4) 문화재 실무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 전문교육기관인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직무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보다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직무교육과정 : '08년 4개과정, '09년 8개과정, '10년 11개과정
 - 전문교육과정 : '08년 5개과정, '09년 6개과정, '10년 7개과정
- 아울러, 동 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 교육과정도 개설,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진형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원성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698

1.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 필요하다

1)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제정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대한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 19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의 국민신탁운동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신탁제도 도입 초기단계로('06.3월 법 제정, '07.3월 시행) 낮은 수준의 기부문화 현실, 국민신탁운동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회원수 1,500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국민신탁법인의 활동역량 강화, 문화유산 소장자 및 관련 단체들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유산국민신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문화유산국민신탁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부는 그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07.4월 설립)의 조직운영 및 활동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였습니다.
 - ※ 지원사례 :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화(서울, 인천, 경기) 사업,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
- 향후 문화유산국민신탁 후원의 밤 및 회원 만남의 날 행사, 홍보브로슈어 제작·배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운영, 울릉도 이영관 가옥, 이상 가옥 등 보전재산의 일반시민 개방을 통한, 국민신탁법인의 활동역량 강화 등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자립기반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때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2. 2005년 이후 도난당한 문화재 회수 미흡

1)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를 보면 영주 금강리 강진 목조품 등 상당수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사진이나 특징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문화재 도난이 발생해도 사진자료 등이 없는 경우 이를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 일부 고서류의 도난 신고 시 사진, 목록 등 데이터가 부실하여 수사는 물론 회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 소장자에 대하여 평소에 사진촬영, 목록기록과 도난 발생시 사진 및 기록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신고토록 교육하고 있으며, 도난 신고 접수 시 사진 등이 없었던 경우도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사진 등을 보완하여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 문중이나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해 불법적인 문화재 매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사진 및 목록 등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도난 시에도 회수할 확률이 높고, 거래가 어려워져 도난대상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소장 실태 조사 및 기록화를 사찰은 '02년부터, 고택·서원·향교 등은 '04년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사찰 : 2,254개소 110,229점 조사(3,126개소 중 72%)
 - 고택 등 : 151개소 75,798점 조사

3) 불법적 문화재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검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별로 문화재전담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사범 단속을 위한 우리 청 사범단속 전담인력은 2명으로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경찰의 문화재전담반이 현재 서울과 대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홍두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0

3.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돼야

- 1)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평가점수가 2008년 7.4→2009년 5.8점으로 낮아졌음. 전문가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던 2008년에 비해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2년차에 들어섬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방재시스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2) 목조문화재의 경우 목조건물의 특성 때문에 개별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획일 적용할 경우 과잉·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난방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위, 문화재의 유형과 가치에 따른 다양한 관리 방법 등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봄부터 문화재 특성에 맞는 기준 제정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모색해보는 국제세미나도 개최하였는바, 전문가 등 대부분이 독자적인 문화재 안전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4.23(금), 14:00~18:30 / 국립고궁박물관

- 주제발표

- 목조문화재의 방재대책(백민호 강원대 교수)
- 문화재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정상우 인하대 교수)
- 문화유산 방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명선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 세미나 결과 :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체계 신설방안에 대해 공감

* 입법방식은 특별법 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소방법 체계에서 수용 등

-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 안전관리 법제화」 연구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중임

3) 현재 방재사업 추진대상 선정방식은 문화재 일괄추진 방식이므로 지명도가 높은 문화재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화재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별로 화재 위험도 등급을 분류해 방재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문화재청은 숭례문화재('08.2.10) 이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고 내·외부적 화재요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합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종합방재시스템은 경보시설, 방범시설, 소화시설,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으로 방재 시설 설치에 필요한 문화재 전체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 150개소에 대해 '08~'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적·중요민속자료(325개소)에 대해 '1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방재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별 화재위험 등급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해당문화재 정보, 지진·풍수해 등 문화재의 재난요소 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망라한 「문화재 재해 위험지수 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중임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4. 고미술품 감정의 신뢰성 제고 대책 강구해야

1) 2000년 중국 지안에서 도굴된 후 행방이 묘연한 고구려 고분 삼실총 및 장천 1호분의 고분벽화가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이야기가 고미술계에서 회자된다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지? 문화재청에서는 고구려벽화를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수수방관만 한 것은 아닌가?

- 2001.10월 고구려 고분벽화 국내유입설 언론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흑룡강성에서 발행한 '요령조선문보' 2001.11.2(4면)에 “집안시 공안국 문물 보호과출소 경찰은 범인들은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들로 모두 잡혔으나 벽화는 행방불명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하였습니다.
- 2010.3.3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 지원 및 정보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 고고연구실
담당자	여성희 사무관 / 이규훈 연구관
연락처	042-481-4731 / 042-860-9172

2). 중국 등에 산재한 우리 고대와 근대 문화재의 훼손을 막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외문화재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우리 청은 중국, 러시아 등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지난 '92년부터 실시하여 기록보존 및 원형유지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유적들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직접적인 보호·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 우리 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국 정부와 양자간 문화재 교류를 강화하면서 고구려·발해유적의 보호·관리가 강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보호·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고미술품 감정을 고미술협회가 독점하므로 감정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진위와 가격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예컨대 고미술품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담당토록하고 가격에 대한 감정은 고미술협회에서 담당토록 한다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사적 목적의 고미술품 감정은 고미술협회를 포함하여 화랑협회 등 4개의 비영리 법인과 옥션 등 다수의 경매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 작용에 따라 고미술협회에서 많은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미술품의 진위감정을 우리 청 산하 특수법인 담당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 문화재 감정은 감정이 개인의 지식과 경험 축적에 따라서 주관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매우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과학적 감정의 중요성 증대)
 - 감정에 관해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닌 외국에서도 개인소장 문화재 감정을 주관하는 공적 기관이 없다는 점을 보아도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일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재 감정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나간다는 관점에서 각 분야별로 충분한 감정 전문인력의 양성과 과학적인 감정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력 확보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4) 20~30%의 파편으로 도자기의 원형복원이 가능한지? 이러한 복원품들이 박물관에 전시되고 도록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은?

- 20~30%의 파편으로 원형을 복원(추정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복원품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복원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성 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당자	유건상 사무관 / 안동찬 팀장
연락처	042-481-4741 / 02-3011-2135

1. ‘한국의 집’ 국내·외 확대로 고품격 문화보급 필요성

1) 한국의집을 국내 유명 관광지와 해외에 추가로 확대 설치·운영하여 대한민국의 명품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정책을 문화재청이 관련부처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의집은 1981년 현재의 전통한옥으로 개축하여 내·외국인들에게 궁중음식, 전통 예술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상품, 전통문화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 홍보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집은 한국 전통문화 홍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유명관광지, 해외에 분점을 설치, 운영하여 명품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지방에 설치할 경우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가격과 음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해외의 경우에는 설치 도시의 선정, 사업 상대방의 의지 등이 중요합니다. 분점의 설치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자비용과 수익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2. 끊이지 않는 문화재 도난 및 불법 거래

1) 도난 문화재, 특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 또, 비지정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도난당하는 이유는? 비지정문화재를 해외 밀반출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풍토가 팽배한 이유 때문 아닌지?

- 최근 5년간 전체 문화재 도난 133건 3,794점 중 비지정문화재가 105건 3,641점으로, 건수기준 79%, 점수기준 96%로 비지정 전적류 문화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비해 상대적으로 사진 등 기록이 부족하여 회수를 위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회수율도 낮습니다.

- 지정문화재는 선의취득 배제, 절도범이 공소시효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장물범·은닉범은 처벌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도난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닌 재산적 가치로의 인식이 문화재 도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문화재 도난방지 대국민 홍보 및 문화재사범 단속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도난도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08년 TV 20회, '09년 TV 20회, '10년 TV 20회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에 문화재전담반이 현재 서울과 대전에 설치되어 우리 청과 공조수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이길배 서기관
연락처	042-481-4745

3. G20 세계정상회의는 우리의 다양한 고품격 문화시설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문화재 활용행사가 전무하다는 점에 유감이며,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복궁, 창덕궁 등 서울의 궁궐은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입니다.
- 우리 청에서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수행원, 기자단 등 정상회의 참여자와 일반인들을 위해 경복궁 야간 개방(광화문-근정전-경희루 권역)과 덕수궁에서의 야간 전통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상회의, 각종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우리 전통문화를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G20 기간 중 궁궐 문화행사 계획 : [붙임 1 참조]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4. 문화재청을 포함한 정부의 해외문화재 환수노력 총체적 부실

1) 일본 총리가 조선왕조 의궤 반환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 움직임은?

- 문화재청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궁내청을 직접 방문 조사('10.8.17.~8.21.)하였으며, 반환 도서를 확인·조사하고 대상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한-일 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외교부에 제안(8.17./외교부-문화재청 회의)하는 한편, 이에 참가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 pool’도 마련(8.31.)하는 등 한-일 정부 간 협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 9월 30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회 임시국회에서 조선왕조 의궤 등의 도서반환을 위한 ‘한일도서 양도협정’ 조약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문화재청은 동 보도의 사실여부를 일본 정부에 공식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관련 정부간 협상 창구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으로, 우리 청이 직접 일본 정부에 공식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 우리 청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칸 총리 담화('10.8.10)에서 “가까운 시일 내 인도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담화내용의 조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지금부터라도 문화재청이 보다 주도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본질적으로 조선왕조 의궤가 반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일본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우리 청은 외교부와 상시 협의체계를 가동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일 정부간 협상’의 실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부처별 실무준비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하는 등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프랑스가 외규장각도서를 반환하는 것을 선언할 지가 관심임,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현재까지 프랑스는 자국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외규장각도서의 영구대여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청은 프랑스가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외규장각도서 반환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과 논쟁, 법적다툼이 있었음.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G20 정상회의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람.

- 약탈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은 조건 없이 반환받는 것이나, 외규장각도서의 경우, 지난 19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문화재청은 외규장각도서의 ‘영구대여’ 방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하였습니다.
- 의원님 지적대로, 문화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외규장각도서가 조속히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문화재청 환수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지난 4년간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도 1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 문화재 환수 담당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비해 문화재 환수를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 문화재청은 문화재 환수 담당 인력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환수 담당 인력 6명을 확보하였고, 관련 예산도 '09년 2억원에서 올해 5억 6천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 예산도 '09년도 3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외문화재 환수의 체계적·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09년도에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 하는 한편, 올 2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시행 '11.2.5.)하여 국외문화재 환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환수 업무를 우리 청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며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재 환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4

5. 민홍규 자화자찬에 나타난 문화재 전문가, 자문도 검증도 없었다.

- 1) 국새제작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나 추천의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위원들이 참여했다면 문화재위원들의 대외활동은 문화재청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본질은 참여한 문화재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함. 동의하는가?
- 2) 이분들이 당시 제대로 된 자문만 했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척 안타까움.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국새제작과 관련한 책임에서 문화재청이 자유로울 수 없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4)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 조사해서 문책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함. 자체감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감사 시까지 보고하기 바람
 - 우리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등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새 제작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성격상 자문에 대한 수용여부는 국새제작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판단사안이어서 자문위원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 청은 이번 국새제작 관련사태에 유의하여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공유 등 관련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5대 국새제작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6. 문화재위원 제재방안, 무형문화재 지정과정,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원 관련

- 1) 1986년 보물 제864호로 지정된 “금고”와, 1992년 국보 제274호로 지정된 “귀함별황자총통”이 가짜로 판명되어 지정해제 되었는데, 지정 당시 심의자인 문화재위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 2) 국가의 문화재를 잘못 지정했다면 문화재위원 자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또 책임을 묻는 전례를 만들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정 당시 심의한 문화재위원에게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의 지정, 해제 문제는 전문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귀함별황자총통”이 지정해제된 1996년 이후 문화재전문가 3인 이상 조사(2001.9.8. 법 개정), 사전 예고제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이재원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5

- 3) 문화유산상 심사위원을 하다가 수상하는 경우, 그리고 소장 공모 시 후보자를 심사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의 지도교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을 것. 이에 대해 어떤 대처를 했는가?
- 4) 대한민국문화유산상 논란이 있을 당시 ○○○은 문화재위원장과 3개 분과의 겸임위원을 했음. 문화재청은 논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궁금함. 이런 행정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말해보기 바람
 - 2004년도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이 처음 제정되었으며, “학술·연구부문” 신청자 중에서는 공적이 뚜렷한 수상자가 몇 분 되지 않아 공적이 탁월한 수상자를 추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차 공적심사위원인 ○○○ 위원을 심사위원들이 추천함에 따라, 1차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심사에 심사위원을 보강한 이후 최종 수상후보자를 추천기로 결의되어 2차 공적심사위원회에서 ○○○ 전 문화재위원장을 문화유산상 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문화유산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2005.6.8. 문화재청 예규 제38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4

5) 2009년부터 심의를 시작한 소목장 공모에서 소반장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상황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 소반 제작이 전문인 추○○는 경남무형문화재 제24호 「통영소목장」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청에 소목장 심사 대상자로 추천되었습니다.
- 우리 청은 관계전문가 서류 심사를 통해 과반수 이상 위원(5인중 3인)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심사절차를 거쳤습니다.
- 현재 우리 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평가 기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통해 지정 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서류 제출시 추○○는 소반장이 아니라 소목장으로 신청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 1996년 금속활자장 심의에서는 조사위원이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함. 이런 사실을 왜 제대로 파악 못했는지?

-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7) 2000~2010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서 이의제기 10건이 받아들여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보유자 심의 과정에서의 의혹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정심의하기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심의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 예고 기간동안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견을 문화재청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접수된 의견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 임용시 청문회 개최, 정부 포상 및 권위 있는 시상시 국민의견수렴 등에서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은 지정(인정)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평가 기준안」)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계량화된 지표 적용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해 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당자	조주성 행정사무관
연락처	041-830-7220

8)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석사과정이 있는지?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지위에 따라 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회 차원에서도 대학원설립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학원과정 개설내용이 포함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한선교의원님이 발의(‘09.11.26)하여 현재 문방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연구소 행정운영과
담당자	윤희영 사무관
연락처	042-860-9121

9) 학예직 특별채용 자격은 석사이상인데 이 지원요건이 2008년도부터 이렇게 변경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하기 바람.

- 다양하고 복잡한 세부전공을 요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2009년도 신설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의 조속한 안정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반적 지식 습득을 위주로 하는 학부생 보다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석사학위 이상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조주성 행정사무관
연락처	041-830-7220

10) 1999년 당시의 입시요강에 있는 졸업생 특전이 이듬해부터 사라졌는데 입학생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1999년도에 첫 입학생 전형^을2 실시하였습니다.

- 신설학교로서 입학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특전을 명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일부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듬해부터는 동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의 공무원, 박물관·연구소 취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부문 취업률('04년 이후) : 전체 취업자 중 44%
- 아울러, 전통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석·박사 과정의 보다 체계화된 고차원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발의 해주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전문적이고 세부화된 커리큘럼에서 공부한 전통학교 졸업생들이 타 대학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일반론적인 부분을 다시 들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문화유산의 보전·전승·활용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과과정을 공부한 졸업생이 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교과과정의 중복 및 불일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불필요한 과목의 이수 등 학업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전공포기 및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대학원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원과정 개설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한선교의원 발의 '09.11)의 제정여야 문화재관리기관 및 업체에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함에 따라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음(개교 이후 전체 졸업생 535명중 20%에 해당하는 110명이 대학원에 진학)

12) 국가에서 설립한 특수목적학교 졸업생들이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타 대학을 졸업하고 전통문화를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통문화학교 대학원으로 오는 게 맞다고 보는지?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이 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업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전공포기·전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대학원과정 개설이 필요합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될 경우 문화재관리학에서부터 조경, 건축, 공예 등을 아우르는 특성화된 전통문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도 한 차원 높은 전통문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기간 중 궁궐 야간개방 및 문화행사 계획(안)

□ 궁궐야간개방 및 운영계획

궁궐명	야간개방 일정	개방시간	개방범위	비고
경복궁	'10. 11. 9 ~ 11. 12(4일)	18:00~22:00	광화문·근정전·경희루 등 핵심지역 중심 개방	
창덕궁	'10. 11. 9 ~ 11. 11(3일)	20:00~21:30	돈화문·금천교·진선문·인정전·부용지·연경당·후원숲길 등	G20 참여자 및 수행원
덕수궁	'10. 11. 9 ~ 11. 12(4일)	18:00~22:00	덕수궁 전지역	

□ G20 기간 중 궁궐별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11.9~12.9)

궁궐명	행사명	행사일시 (시간)	행사내용	비고
경복궁	수문장교대의식	11.9~12일 (10:00~15:00)	수문장 교대 재현	우천시 중지
창덕궁	달빛기행	11.9~11일 (19:00~20:30)	궁궐야간관람프로그램(달 빛체험, 전통공연관람 등)	G20 참여자 및 수행원
덕수궁	수문장교대의식	11.9~12일 (11:00, 14:00, 15:30)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우천시 중지
	세계로 通하는 서 울풍류	11.9~12일 (19:00~20:00)	중요무형문화재 및 전통 예술장르 공연	덕수궁 정관현

서 갑 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인규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8

1. 전수조교 검증절차 강화

1) 중요무형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인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현황

전승자 \ 분야	예능종목	공예종목	계
보유자	114명	71명	185명
전수교육조교	248명	52명	300명

2) 500여명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들 중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

○ 현 문화재보호법령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선정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승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5년간 범죄사실로 인하여 인·선정이 해제된 전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	성명	지위	인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판소리	○○○	보유자	1991.5.1	2008.2.21	금품수뢰, 배임수재
목조각장	○○○	보유자	2001.12.21	2004.1.6	명예 훼손(금고 이상의 형)
강릉단오제	○○○	전수교육조교	2000.7.22	2007.6.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하회별신굿탈놀이	○○○	전수교육조교	2000.7.22	2007.6.21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3) 2007년 전수교육조교 1명 등록해제 사유

종목	성명	지위	인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강릉단오제(13호)	○○○	전수교육조교	2000.7.22	2007.6.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4) 2004년 김모씨가 성폭행으로 구속 수감된 후 석방될 때까지 전수조교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존회에서 상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관련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 2009년부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매년 공개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 2007년 이후 4년 동안 신규로 임명된 전수조교 인원은? 임명된 전수조교는 물론 앞으로 임명될 전수조교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전수교육조교는 36명입니다.
- 현행법은 조교의 선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상 전수교육조교의 역할과 중요도가 높음에 따라 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제 사유에 준하여 전수교육조교도 해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전수교육조교 선정 시 동 개정내용을 근거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검증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고기석 사무관
연락처	042-481-4640

2. 성매매 직원에 ‘불문경고’,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견책, 경고

1) 문화재청 직원 중 성매매, 금품수수, 음주운전 자 등에 대해 불문경고나 경징계만 그친 사유

-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관할)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의 경우라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기타 6급이하 공무원과 경징계에 대해서는 자체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등 규정에 따라 5급이상 7명과 6급이하 중징계 2명 등 9명은 중앙징계 위원회로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13명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 한 것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임의로 처리기관을 정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매매, 금품수수, 음주운전 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 처분된 자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3)과 같이 양정규정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 재량행위가 거의 없는 사항으로 동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247호) 중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붙임 1 참조)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처리 건은 친절한 민원 상담에 대한 사례로 66,000원 상당의 이미테이션(짜퉁) 가방을 제공 받은 사안으로 수차에 걸친 거절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동 물품을 놓고 갔던 점, 수수한 금품이 현금이 아닌 물품이고 물품 가격이 소액인 점을 감안, ‘공무원 비위사건처리’ 규정에 따라 견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리 건은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위반할 당시 지방에 근무하고 있던 징계자(타부처 2010.7.1자로 문화재청 전입)가 신종플루 대책반의 일원으로 중앙인플루엔자대책 본부로 지원근무 발령을 받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매일 심야까지 철야근무를 함으로써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위반행위 이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한 점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동 직원이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 4조 징계감경 기준에 따라 견책에서 경고로 경감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247호)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 고 경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 을 위반하여 혈중알코 올농도가 0.05퍼센트 이 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 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 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 주측정 불응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도주’란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를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김 부 검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문영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5

1. 군사시설 빌미로 토성·산성 파괴

1) 국방부가 산성, 토성 등의 유적을 훼손해왔음에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토성/산성 내 군사시설 현황이 5개소라고 제출하였는데 5개소가 맞는지?

- 군사시설은 대부분 문화재 관리가 미비했던 '50년~6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내 군부대시설은 1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적 제469호 은대리성 등 3개소는 '09년에 일부 및 원형복원 되었으며,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내 군 시설은 연차적으로 이전·복원 예정임

2) 국방부가 국방이라는 미명아래 역사적 가치 있는 관방유적들을 맘대로 훼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파악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인가?

- 우리 청에서는 군부대에서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사적지 내 현상 변경허가를 '04년부터 '10년까지 13건을 신청 받아 처리하였으며, 군부대가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설물 등의 설치가 검토 될 수 있도록 교육, 절차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 없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은?

- 군부대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06~'18)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군 시설의 이전 등 문화재보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임병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1

2. 천연기념물 347호 제주마, 순수혈통 사라졌다.

- 1) 제주마의 순수혈통 보전을 위해서는 지정된 제주마(천연기념물 347호)에 대한 엄격한 정밀조사를 전면적으로 재 실시 하여 순수혈통마를 가려내고 제주마 관리지침의 허점인 천연기념물 2-3세에 대한 인증방법을 개선하고 몸높이 조항을 개정하여 월령을 명시하고 표준편차, 최고치, 최저치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관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주마는 1980년대 운송수단발달, 농기계보급 등 산업화에 따른 활용도 저하로 멸종 위기에 직면하여, 그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85년 「제주마의 혈통정립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시된, 체형, 외모 및 혈청조사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마필 64마리를 198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입니다.
 - 지정 제주마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한라산 목마장에서 현재 171마리(암마 142, 숫마 29)를 교잡마, 외래마의 접근 및 혼합사육을 제한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외모, 혈통검사 등 정밀검사, 제주마 보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조언 및 자문을 통해 제주마 보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 및 관리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 병 완 의원

【서면질의】

1.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 미비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나명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17

1)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는 실시 도면 및 사진자료 등을 기록화하여 문화재 훼손 시 복원·보수 자료로 활용하고, DB화가 완료된 자료는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국민들에게 학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중요목조문화재 실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정밀실측대상	정밀실측신지	(단위 : 건)		
			정밀실측 추진대상		
			계	추진중	추진예정
국 보	23	22	1	0	1
보 물	128	98	30	15	15
계	151	120	31	15	16

※ 중요목조문화재의 정밀실측조사는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홍두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0

2) 화재 등에 대비해 정밀실측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자체의 화재 보험 가입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재청의 행정행위가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의무 주체는 관리단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부분도 자율에 맡겨 왔음
- 숭례문 화재 이후 안전경비인력 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난감시설비, 소화시설(옥외소화전, 방수총, 이동식소화설비 등) 설치 등 화재위험률을 낮추는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도 문화재 보험상품 개발 등 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가입도 증가추세에 있음
- 더불어 '10.3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지자체 등)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지자체 소관 문화재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 숭례문화재 이후 본격적으로 방재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위험률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그간 저조했던 화재보험 가입이 근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지자체 관리 중요목조문화재 국보·보물 130건을 대상으로 8년 대비 '10년 40% 증가('08년 28건, '10년 39건 가입)
- 또한 지속적으로 안전경비인력 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난감시설비, 소화시설(옥외소화전, 방수총, 이동식소화설비 등)을 설치 중에 있어 화재위험률이 감소되어 소극적이던 보험회사도 문화재상품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는 등 화재보험 가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화재 보험료를 일부 국비로 지원하면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지적하신 화재보험 가입의무화는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으며,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국·공유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민간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고지원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최재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957

2. 매장문화재 관리 일원화

1) 매장문화재는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지역에서 관리해 지역 역사 문화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의견은?

- ‘출토유물은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해야 문화재의 역사적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원칙적 입장에 동의합니다.
-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 하더라도 전국 주요 도시에 11개의 지역박물관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전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연구자료 활용이 가능하며,
- 또한 향후 해당 지역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시설 및 관리인력이 우수한 공립박물관 및 전시관에 대한 위탁을 한층 강화하여 매장문화재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지방국립박물관의 위탁, 대여 요청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하는 의무 규정 마련

2)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를 보관할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왜 ‘매장문화재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려 하는가?

- 수장고 확충은 발굴 매장문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지방국립박물관 포함)이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질적으로 균일한 유물 수장시설과 전문 관리능력(다수의 전문인력과 유물관리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관·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나주, 공주, 김해, 경주 등 주요 유적지에 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협의를 통해 석기, 토기편 등 향온항습이 필요 없는 유물은 일반수장시설로 건축토록 하여, 중요 유물과 온습도에 약한 유물만 향온항습 시설을 갖춘 수장시설에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적은 예산으로 수장 시설 확충 가능)

3) 전국 각 시·도 지자체에서 매장문화재의 보관 및 관리청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재청만 일원화를 밀어붙이려 하는가?

-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려(국립박물관의 유물관리 편중화)도 이해하는 바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매장문화재 관리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여 유물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관·관리관청의 일원화가 지역의 문화적 소외나 연구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민이 해당지역의 출토 유물을 충분히 향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한 국공립박물관으로 위임·위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업데이트 지연

1)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나 복원사업은 대부분 문화재청을 통해 국비가 지원되는데, 문화재청은 복원사업 후 모습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상하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 문화재청에서는 홈페이지 해설자료 개선 T/F 구성·운영, 문화재 담당 시도 국장

회의 시 현행화 촉구(2010년), 관련 자료 제출 공문 발송(2010년 3회) 등을 통하여 지정문화재 사진 등 콘텐츠와 해설자료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 관련 사진 등의 업데이트를 위해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체결한 헤리티지뷰 구축사업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헤리티지뷰 구축 사업에서는 문화재 로드뷰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헤리티지뷰’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2010년 5월 이미 협약하였으며, 향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예정에 있습니다.

3) 문화재 관련 사진 등 DB의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모습이 달라진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면 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문화재 관련 사진 등 DB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홈페이지 개편 시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 장 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박왕희 서기관
연락처	042-481-4914

1. 선 반구대암각화 보존, 후 대체수원 확보

1) 반구대암각화의 보전을 위해서 먼저 수문설치를 하여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암각화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한 후에 대체수원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적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가 1965년도에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해 매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훼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반구대암각화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사연댐 수위조절(대체 수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및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 공청회 등을 거쳤으나, 주변 역사경관 및 자연환경 파괴, 울산시민들의 식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사연댐 운영 수위 조정을 검토한 결과, 사연댐 수위를 해발 60m에서 해발 52m 수준으로 낮추어도 울산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2009년도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문화재청, 울산시, 국토해양부)간의 조정회의를 통해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대체 수원을 확보토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울산시가 사연댐 수위를 낮춤에 따라 줄어드는 용수 부족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보존대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므로 해서 줄어드는 수원과 울산시의 청정수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운문댐 여유수원 활용 및 공업용수인 대암댐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사연댐 수위조절이 되더라도 울산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및 수문 설치를 우선 시행한 후 대체 수원 확보에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존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최 문 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공능문화재과
담당자	박정상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6

1. 문화재청 송례문 화재로 받은 78억 날리나

1)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이 작년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됨. 계약당시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스템에 78억이나 되는 국고를 투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 3천만 원을 부담한 것은 국고 낭비임. 현재까지도 시스템이 불안정해 영상추적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낮 시간에는 기능하지 못하는 자동영상추적장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 우리 청은 감사원 처분요구(2010.4월) 지시에 따라 영상추적 서버(16대) CPU 사양을 교체, 관제센터(3개소) 서버 랙의 접지 시공 및 카메라 폴(200개소) 접지를 접속점이 없도록 재시공, 3D 영상통합감시 기능 구현, 서울 종합방재센터로의 영상제공 기능 구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영상추적기능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중단없이 작동·운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고궁관리소 종합경비시스템 운영센터(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서 운영직원들이 24시간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종합경비시스템은 주·야간, 사람 등 이동물체의 유무, 경비시스템 세부기능의 종류 등에 따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종합경비시스템에 구현된 영상추적 기능은 관람객 이동(빈번한 물체 이동)이 없는 휴무일 주간과, 평일 야간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며, 야간에 무단 침입자 발생시 침입자의 이동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고궁에서 평시 현장에 상주방호원이 배치되어 관람객 통제가 이루어지는 주간보다 순찰원에 의해 방호업무가 수행되는 야간에 예측하지 못한 무단침입자 등의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필요한 기능입니다.
- ※ 대부분의 CCTV 시스템은 주간에 모니터링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고궁의 경우 관람객 이동이 빈번한 주간에 영상추적기능을 작동시킬 수는 있으나 추적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만 지속적으로 움직이므로 기능 작동의 효과는 크지 않음

2) 준공검사 완료 후 15개월이 지났는데도 하자보수기간만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계속 연장해줘도 되는 것인가? 그간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우리 청은 감사원 처분요구(2010.4월) 지시에 따라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왔으며, 영상추적기능 이외의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2010.05.04 : 2009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통보 및 조치요구(감사탐→공능문화재과)
 - 처분제목 :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준공검사 업무 등 부당 처리
 - 조치할 사항 : 계약된 사양에 맞도록 관련 장비 교체, 기능보완, 접지 재시공, 기능 구현 후 6개월간 참여기술자 현장 배치 방안 강구
- 2010.05.10 : 감사원 지적사항 등 조치 요구(문화재청 공능문화재과→시공사)
 - 감사원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조치결과 제출 요구
 - 시스템 보완완료 후 6개월간 참여기술자 현장상주 이행사항 통지
- 2010.05.13 :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시공사→문화재청 공능문화재과)
 - 영상추적 기능 외 조치 완료 보고
 - 시스템 보완완료 후 6개월간 참여기술자 현장상주 성실히행 답변
- 2010.05.24 :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검사계획 통보(문화재청 공능문화재과→시공사)
 - 검 사 일 : 2010.5.27 ~ 5.28
 - 검 사 자 : 문화재청, 감사원, 관련전문가
 - 검사장소 : 4대궁, 종묘, 서울종합방제센터
 - 검사내용 : 감사원 지적사항 등 종합경비시스템
- 2010.06.10 : 종합검사 결과보고서 제출(감리사, 전문가→문화재청 공능문화재과)
 - 3D 영상통합감시 기능 구현, 접지 재시공 등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6개항) 중 5개항 보완 완료
 - 영상추적 기능 미 구현
- 2010.06.15 :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하자보수 조치 요청(공능문화재과→운영지원과)
 - 영상추적 기능 하자보수 조치 요청
- 2010.06.16 : 하자보수 실시 요청(문화재청 운영지원과→시공사)
 -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요청('10.6.25 기한)
- 2010.06.24 :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시공사→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10.7.23 완료 계획)
- 2010.07.21 : 하자보수사항 검사계획 통보(문화재청 공능문화재과→시공사)
 - 검 사 일 : 2010.7.23
 - 검 사 자 : 문화재청, 감사원, 관련전문가
 - 검사장소 : 4대궁, 종묘
 - 검사내용 : 영상추적기능 구현 여부

- 2010.08.05 : 하자보수 점검사항 보고서 제출(감리사, 전문가→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영상추적기능 미 구현
- 2010.08.05 : 하자보수사항 검사결과 알림(궁능문화재과→운영지원과)
 - 영상추적기능 미 구현
- 2010.08.18 : 하자보수 재실시 요청(문화재청 운영지원과→시공사)
 - 하자보수 재 이행 계획서 제출 요청('10.8.27 기한)
- 2010.08.27 :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시공사→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하자보수 재 이행 계획서 제출('10.9.17 완료 계획)
- 2010.09.09 : 하자보수 계획서 변경 제출(시공사→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하자보수 재 이행 계획서 변경 제출('10.10.29 완료 계획)
 - 변경제출 사유 : 잦은 낙뢰 등으로 인한 일부카메라 오작동 사항에 대한 우선 보완 조치 선행 필요
- 영상추적기능은 '10.10.29. 기한으로 하자보수를 조치 중이므로,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조달청 의뢰),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가능한 조치를 금년(2010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조치를 시행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운영자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시스템 보완 완료 후에는 감사원 시정 통보 사항(시스템 완료 후 6개월간 시공사 관계자 상주 연장)에 따라 시공사 관계자를 6개월간 상주시켜 운영자 추가 교육 및 시스템 안정화를 조치하는 등 종합경비시스템 사업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포
담당자	도중필 서기관
연락처	042-481-4861

2. 월정교 복원공사 현장, 문화재 전문수리공의 노예계약 문서 발견

- 1) 이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 시 공사현장 실태조사를 했는지? 무형문화재의 연령이 고령화 돼 있어 그 분들의 숨씨가 끊길 위기임. 우리나라 전통한옥의 기와, 단청 만드는 일은 일감도 적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음.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서 지켜줘야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 시 공사현장 실태조사 실시 여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워크숍, T/F회의, 관련 협회와 업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2005년, 한국전통문화 학교 부설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워크숍 개최(2006.1.25,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업계, 학계 전문가 등 참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T/F 개최(10회, 내·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여)
 - 수리기술자 협회, 수리기능인 협회 등 관련협회 업무협의(4회)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2월 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제정법령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5일 시행 예정임

-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전승단절 위기, 이에 대한 전승활성화 대책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188명 중 80세 이상이 21명(11.2%), 70세 이상이 89명(47.3%)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청에서는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시 실태조사를 통해 일정 연령 대에 이른 보유자 중 기·예능 실연이 어려운 고령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명예보유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새로운 후계자(조교/이수자)를 양성, 충원함으로써 전승단절에 대비하고 있으며,
- 무형문화재 종목 중 사양화되어 가는 공예기술의 전승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경쟁력 확보와 자생력을 길러주는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으로서 (1) 공연·전시기회 확대 (2) 판매유통망 확보 지원 (3) 공예원료와 재료의 품질개선 및 지원 (4) 기업의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참여 (5) 합동공개행사를 통한 비용절감과 사회적 관심 유도 등을 추진하고,
 - 아울러, 전통공예에 대한 사회적 수요창출과 시장 확대를 위하여 전통공예판매전 개최(2010.6)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문화재 수리공사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 제정된 법에서 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종합 문화재수리업자로 나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제정된 법도 불법하도급 현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문화재 공사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심각함.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청장 생각은 ?

- 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나눈 특별한 이유는?

- 문화재수리업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 것은 문화재수리의 전문화와 시공능력을 강화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발전과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종합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수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수리의 단청, 목공사, 석공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 공종별 시공능력 및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정된 법도 불법하도급 현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방법·절차 등의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운용상 애로가 있어 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되는 법에 새로 규정된 하도급 관련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공사 하도급시 법정계약서 사용의무화
 - 도급받은 수리공사의 일부를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의무화
 - 하도급의 범위는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 대금은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의무화
 - 발주자는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공사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심각함. 이를 근절
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청장 생각은 ?

- 문화재수리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문화재수리공사 하도급은 법정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평등한 조건에서 하도급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 관련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김성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4

3. 민주화와 천주교의 성지, 명동성당마저 재개발 되나

1) 명동성당 주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서 현장을 직접 시굴하였으며, 공사지역이 아닌 기초부 외측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 발굴제도과에서 실시한 조사가 무엇인가? 유적 때문이든 안전 때문이든 실제 지하공사가 실시되는 곳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명동성당 주변 재건축 현상변경 신청('10.2.2)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10.4.1)에서 재건축에 따른 명동성당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최된 자문위원회에서는 명동성당의 구조적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해 성당 기초부 시굴 조사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한 바, 9월 실시된 조사는 명동성당 건물 기초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해 2개소 실시한 것입니다.
- 또한 명동성당 개발계획사업 대상부지 중 지하층 개발이 이루어지는 '나구역'(북측 주차장, 진입로, 테니스장, 사회복지관 서측 공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10.4.2) 하였으나, 현재까지 발굴조사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 공사지역이 아닌 성당 좌우 기초부에 대해서만 두 군데 확인했다면 이는 형식적 조사가 아닌가 ?

- 이는 자문위원회에서 명동성당의 구조적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해 성당 기초부 시굴 조사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구조전문가 자문을 받아 2개소 시굴하여 명동성당 기초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한 조사입니다. 개발계획사업 구역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으나('10.4.2), 아직 발굴조사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2개소 시굴 결과 60cm 지하에서 풍화암반층의 견고한 지반 및 그 위로 장대석 기초 확인.

3) 건물의 특성상 구조적 문제가 커 문화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명동성당이 이번 달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함. 명동성당 재개발건이 이번에 통과되는지?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건축 및 구조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주변 재건축에 따른 명동성당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철저히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중이며,
- 자문위원회에서 명동성당 안전성 등의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사항으로, 기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제5차, '10.10.7)에 안전이 상정된 바 없으며, 소문의 진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4)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동성당 재개발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압력을 받았는지 ?

- 명동성당 주변재건축 현상변경 건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4. 약탈문화재 환수 전문가 그룹 조직해야

1) 문화재청이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해 ‘약탈문화재 환수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야한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각국의 법률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향후 정부간 협상에서 환수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청은 지난 '09년 4월부터 국내 법과대학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문화재법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단체와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청이 구성('09. 4월)한 「문화재환수 협의회」에도 국제법 및 문화재 환수 관련 각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청은 이들 환수 전문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이 정부간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창 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1. 문화재 반환협상,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됨

1)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반환’이 아닌 ‘영구임대’로, 일본의 경우 ‘궁내청’에 있는 문화재 몇 건만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진정한 약탈문화재 환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 문화재 반환 문제는 국제법적 강제수단 미비로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만, 일본은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으로 정부간 협상은 일단락되었다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자국법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청은 문화재 반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재 양국 간에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실도서(의궤 포함)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지난 1993년 한-불 정상 간에 외규장각도서를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우리 청은 불가피하게 ‘영구대여’ 방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며
-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도서의 경우, 일본 측은 이번 총리 담화를 통해 의궤 등 우리 도서에 대한 반환 의사만을 밝히고 있어 반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향후 우리 청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도서 반환이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당자	양진조 학예연구관
연락처	02-3701-7651

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관리 및 보존처리 인력 수급 시급해

1)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처리 인력이 인력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부족한데 그렇다면 유물이 방치되고 유물 손상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과 대처 방안은?

-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42,544점)의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 1명으로 비정규직 연구원(5명)을 채용하여 보존처리 업무에 투입하고 있지만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의 유형과 유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인력이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인력 6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존처리 전문인력의 충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0년 직제에 정규직 2명(학예연구사)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 충원분야 및 인원 : 목·칠기류 1명, 옥석류 1명(현재 채용 절차 진행 중)
- 그러나 2명이 추가되더라도 최소 필요인력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추가 충원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충원 필요분야 및 인원 : 금속류 1명, 서화·직물류 1명, 보존환경 1명
-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처리는 분야별 필요인력(6명)이 모두 충원 된다고 하더라도 단시일 내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이는 각 궁·능 및 종묘의 유물보존시설이 없는 전각 등에서 오랫동안 자연상태로 보관되어 상당한 정도의 훼손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할 즈음에 일시에 박물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유물 수장시설 개보수를 통해 소장유물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유물보존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물 수장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는 2009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104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수장고에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시설인 조습패널과 유물 수납장, 생물학적 훼손을 예방하는 훈증시설(2기)을 설치하고, 2010~2013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하여 유물수장고에 동력을 공급하는 각종 노후 전기·기계설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 유물 보존시설 개보수 계획

		-	(2억원) 실시설계	(30억원) 장비제작	(48억원) 장비 구입·설치	-	(80억원)
사업 내 용	동						
	수 장 고	(10억원) 수장고 신설· 조습패널(1실) 향온향습기 개선	(28억원) 조습패널 3실 수납장 3실 향온향습기 개선	(10억원) 조습패널 2실 수납장 2실	(22억원) 조습패널 5실 수납장 7실	(34억원) 조습패널 4실 수납장 4실 훈증고 2실	(104억원) 조습패널 15실 수납장 16실 훈증고 2실

※ 2005년 수장고 1실에 대해 조습패널 및 수납장 기 설치

- 소장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서는 당해 유물 보존처리의 긴급성, 보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 박물관 자체 보존처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외부 위탁 보존처리와 자체 보존처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외부 위탁보존처리는 자체 조사결과 긴급한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유물 중에서 외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화류, 노부류 및 가구류 유물 중 653여점에 대해 1차적으로 10년간 추진할 계획이며(소요예산 100억원), 자체 보존처리는 처리인력 12명(정규직 3, 비정규직 9명) 기준으로 매년 평균 500여점씩 처리해 갈 계획입니다.
- 위탁 보존처리(10년) 추진계획(1차)

(단위 : 점, 억원)

연도	구분	수량	사업비	비고
1~3 차년도	서화류 (지류, 직물, 안료 등)	54	9	
	서화류 (지류, 직물, 안료 등)	55	10	
4~7 차년도	서화류 (지류, 직물, 안료 등)	59	11	
	노부류 (직물, 목재, 금속 등)	79	8	
	노부류 (직물, 목재, 금속 등)	82	10	
	노부류 (직물, 목재, 금속 등)	84	13	
8~10 차년도	노부류 (직물, 목재, 금속 등)	81	9	
	생활용구류 중 가구류 (목재, 금속 등)	46	9	
	생활용구류 중 가구류 (목재, 금속 등)	48	11	
10개년		635	100	

- 유물보존처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차 10개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존처리 시급성이 상당한 정도 해소되어 정상적인 유물보존처리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연간 12~1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0년도 보존처리 사업비 115백만원). 예산당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조주성 행정사무관
연락처	041-830-7220

3.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중 박물관/연구소 취업생들 대부분 비정규직

1) 전통학교 졸업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

- 상당수의 문화재 유관 기관 및 업체에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거나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긴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인 취업 여건을 고려할 때 학사 학위 취득만으로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

*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졸업생 535명 중 대학원 진학자는 총 110명(20.5%)

2) 전통학교 자체 대학원 과정 개설로 학생의 수요나 졸업생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대학원 설립 내용이 반영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한선교의원 발의/ '09. 11. 26)을 제정하기 위해서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신희권 연구관
연락처	042-481-4947

4. 해양문화재연구소 4대강 주변 문화재 날림으로 조사

1) 수중조사를 41일만에 27개소를 조사했는데, 해양 조사를 이처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지?

- 4대강 권역의 육상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옛 나루터를 포함한 수중 관련 유적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인문학적·역사학적 자료가 검토되었으나 육상에서의 뚜렷한 유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나루터 등 수중 관련 유적에 대해 일부 수중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조사기관별로 구체적인 조사 기준이나 방법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 육상 지표조사 참여기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조사 전문가들이 연석회의를 실시한(2009.6.15) 결과,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수중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선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27곳을 선정하여 정밀 수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4대강 유역 수중조사 추진 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2009. 7.27 ~ 8.21(26일간)
 - 조사기관·인력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중심, 민간조사기관 공동참여
 - 조사대상 : 한강 구미포나루터 등 27개소
 - 조사 결과 : 특별한 유구나 유물 확인 안 됨

4대강	조사지역	소요기간	조사인원	진행상황
한 강	3개소 구미포나루, 새나루, 조포나루	7.27-7.31	8명(동방문화재연구원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잠수사 2,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유구, 유물 없음)
금 강	6개소 대봉암나루, 용두나루, 난포루, 구드래나루, 고다진나루, 곰나루	8.10-8.21	8명(동방문화재연구원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잠수사 2,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유구, 유물 없음)
낙동강	15개소 함안 장포나루, 창원 주물연진, 본포나루, 유등나루 I, 유등나루 II, 동원나루, 양지나루, 도요나루, 감노나루 I, 감노나루 II, 신주막나루, 개목나루, 울지나루, 삼화나루, 부곡나루	7.27-8.12	9명(영해문화유산연구원 3, 동아대해양자원연구소 1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잠수사 3,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자기편 외 유구, 유물 없음)
영산강	3개소 석관정, 회진나루, 몽탄나루	7.27-8.2	5명(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 잠수사 2, 육상조사기관 1)	* 조사 완료 (유구, 유물 없음)
계	27개소		총 30명	

- 수중조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4개 기관이 연합으로 실시함에 따라 조기에 마칠 수 있었으며, 4대강 유역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 나루터의 특성상 유구 잔존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장시간에 걸쳐 지형이 심하게 변경되었고, 현대에 준설된 구간도 많아, 추가적인 수중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2) 처음부터 수중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2009년 6월에야 실시한 이유는?

- 문화재청 고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8.6.10) 제7조 3항에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
- 6월초 수중 준설공사 계획을 포함한 4대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중전문기관과 협의·시행토록 통보(2009.6.17)하여, 2009. 7. 27 ~ 8. 21(26일간)에 걸쳐 한강의 구미포나루터 등 27개소에 걸쳐 수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유물분포지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조사하지 않고 불법공사 강행

- 1) 금강 5공구 지역인 충남 부여 일대는 지표조사 결과 유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표본조사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벌임. 이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지역임. 이런 곳에서도 이 정도라면 다른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혹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눈감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금강 5공구 내 충남 부여 구교리 중리 유물산포지는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지로 추정된 표본시굴조사 77,576㎡ 중 40,570㎡를 문화재 발굴허가에 따른 발굴조사 이행 없이 무단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발굴기관(금강문화유산연구원)이 훼손사실을 발견('10.6.28), 신고함으로써, 문화재청은 훼손지역에 대한 긴급 수습 발굴조사를 실시('10.7.19 조사보고)하였습니다.
- 훼손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수습조사결과, 절개면을 조사한 대부분 트렌치에서 문화층 및 경작층 미발견, 4트렌치에서 조선시대 경작층(밭) 확인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유구로 볼 수는 없으나, 매장문화재분포지로 발굴 허가된 부여 구교리·중리 유물산포지 중 일부 40,570㎡를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거한 발굴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훼손(현상변경)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에 문화재청은 2010.7.27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훼손자인 시공업체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0.7.6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 4대강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한편, 부여 구드래일원, 왕홍사지 등 중요 지정문화재는 그 가치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4대강 주변 농지 리모델링 대상부지/골재 적치장 졸속 문화재 조사 우려

-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구간 중 정밀발굴조사 실시 예정지역에 공사 시행 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까지 농지 리모델링 사업부지 130개 지구에 대한 지표조사 및 조사기관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121개 지구에 대한 보존대책 통보가 완료하였으며 46개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수정되는 지구가 존재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현황 자료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청에서는 민간 주도의 중·대형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문화재 보존 원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하여 시(발)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골재 적치장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의 문화재 조사 실시 결과, 유적 보존 조치가 결정된 곳이 단 1곳도 없음. 이는 가치있는 문화재가 없다기보다는 졸속으로 문화재 조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까지 골재적치장 부지 지표조사는 64개 지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중 구미 월곡지구 등 4개 지구가 문화재 밀집분포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에서 제척·보존되었으며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수정되는 지구가 존재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현황 자료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청에서는 민간 주도의 중·대형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문화재 보존 원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하여 시(발)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정성조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1

7. 서울 소재 궁, 종묘, 외국관광객 위한 문화재 해설사 다양화해야

1) 외국관광객에게 한국문화재를 소개하고 관광지 현장에서 한국문화를 해설해 줄 전문가가 요청되고 있음. 현재 문화재 해설사 현황은?

- 4대궁 및 종묘의 문화재 해설사는 총 52명(정규직 4명, 비정규직 48명)이며, 기관별 해설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증가하고 있는 관람객과 해설수요 등에 대비하여 궁궐지킴이 등의 단체에서 안내해설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복궁 14명(한국어 3명, 영어 5명, 중국어 3명, 일어 3명)
 - 창덕궁 15명(영어 6명, 중국어 3명, 일어 6명)
 - 창경궁 7명(영어 3명, 중국어 2명, 일어 2명)
 - 덕수궁 5명(영어 2명, 중국어 1명, 일어 2명)
 - 종묘 11명(영어 3명, 중국어 2명, 일어 6명)

2) 현재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의 문화재 해설사 중 프랑스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동남아 해설사가 없는데, 이 언어권 해설사의 충원이 없는 이유는?

- 궁궐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경복궁의 경우, '10.9월 현재 전체 외국인 관람객 (864,377명)중 일어·영어·중국어권이 96.2%(일어 25.7%, 영어 8.6%, 중어 61.9%) 차지하고 있고, 종묘의 경우 일어·영어·중국어권이 99.3%(일어 89.8%, 영어 7.6%, 중어 1.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어와 중국어, 영어권 관람객이 외국인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소수 언어권의 전문 해설사를 상시 배치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특정 언어권(프랑스, 스페인 동남아어권 등)의 관람객이 증가할 경우 해당 언어권에 대한 해설사를 추가 배치하고, 특히 동남아어권(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경우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문화재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 4대궁 및 종묘의 경우 안내해설사 채용 시 안내경력자·외국어능통자 및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 후 신규자 교육, 궁궐·왕실문화에 대한 심층교육, 친절교육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의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는 등 안내해설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자체교육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 해설사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8. 비지정문화재 관리 철저한가?

1)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매년 도난의 주 대상이 되는데, 비지정문화재 보존에 대한 특별대책은?

- 국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에 비해 사찰·문중·개인 소장의 경우 도난에 취약한 실정에 있음이 사실이나 '개인재산'인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의 비지정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을 DB구축(개인소장 동산문화재 → '문화재원형기록시스템'(내부용 DB사이트)), 보고서로 배포하고 중요문화재는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02~'09년, 11만여점 조사완료, 보물지정 32건)
-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04~'09년, 7만5천여점 조사완료)
-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는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난문화재 회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교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1984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난	연도당 약 20건	14	12	4	6	4	8	3	2	1	3
회수		미	상		3	2	4	2	0	1	2

- 필요시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장자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등에 대한 기탁 등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조항을 신설(제94조의 2)하여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보존환경 강화 등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을 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1. 해외 약탈 문화재에 대한 피해국가 국제공조 적극 주도해나가야
- 지난 4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협력회의” 관련

1) 우리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불법유출, 약탈당한 문화재가 10만점이 넘는데, 외규장각도서 및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 왕실도서만을 반환 촉구한 이유는?

- 이번 문화재 피탈국간 회의를 주최한 이집트는 각 나라별로 반환 희망목록을 5건으로 제한한 바, 우리 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양자협상을 준비 중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도서에 대하여 반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2) 카이로 선언문 초안과 관련하여 도난이나 약탈에 의한 불법반출 문화재와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당시 이전된 문화재의 차이는?

-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당시 이전된 문화재의 경우 1973년 유엔총회 결의(3187호)에서 최초 규정되었으나 결의 또는 선언 형식이어서 구속력이 없고 당사국 간 양자협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나 점유국이 협상을 기피하면 해결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의 문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과거 침략 국가들이 국제규범 형성을 방해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2007년 ‘원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 등 집단적 인권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도난 및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 문화재는 마약, 불법무기와 함께 세계 3대범죄로 인식되어 INTERPOL(국제형사기구), UNDOC(UN마약범죄사무소), WCO(세계관세기구), UNIDROIT(세계사법통일성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방지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1970년 UNESCO협약(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국제규범화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입니다.
- 다만, 동 협약들은 국제조약의 비소급효 원칙으로 협약 발효일 이후 (1972년 4월) 불법 거래된 문화재만을 반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집트, 남미 등의 국가들은 동 협약 발효 이전에 밀반출된 문화재가 현안인 상황입니다.

**3) 도난, 약탈보다 오랜 기간 식민지배와 외국군 점령으로 피해국가에
가해진 고통과 더욱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재 반출 문화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욱 악질적인 국제범죄 행위가 아닌지?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재의 불법반출 보다 식민지배로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유네스코는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강제적인 반환의무 또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청은 지난 2008년 ICPRCP(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08.11.25~11.28 / 서울 신라호텔)를 개최하면서 전문가 회의에서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의 국제법적 해결원칙을 제시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 올 4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문화재 반환 국제회의에서도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 반환의 중요성을 각 국에 호소하는 한편, '카이로 선언문'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참가국 중 페루는 문화재 불법유출을 국제범죄라고 비난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규범 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그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제정 문제와 관련하여, 페루가 규범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 이러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제정에 대해 우리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반환해야할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이 1970년 UNESCO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청은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협약과 법률 및 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09년 4월에 「국제문화재법연구회」(국내 법과대학 교수 12명 참여)를 조직한 바 있으며, 향후 국제문화재법연구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참가국 중 나이지리아가 지적한 1970년 유네스코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의 문제점과 내용은?

- 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 등은 협약의 비소급효가 원칙으로 협약 발효일 이후 불법 거래된 문화재만을 반환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각국이 협약의 비소급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도난이나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 문화재에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가 대부분인 나라에서는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참가한 국가들이 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 연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 원칙’을 강제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확립하는 한편, 문화재 반환에 소극적인 과거 약탈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통해 국제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피탈국간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문화재 피탈국들이 주로 참여하여 어느 때보다도 국제연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 반환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한편, 국제법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며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7) 적극적인 약탈문화재 피해국가 국제공조 활동 전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및 향후 계획은?

- 우리 청은 지난 2010년 4월 이집트 카이로회의 뿐만 아니라 2011년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문화재 피탈국간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원칙이 국제사회에서 규범력 있는 국제법적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8) 이와 관련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전담 부서 및 인원 확충 계획 및 예산편성 계획은?

- 문화재청은 문화재 환수 담당 인력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환수 담당 인력 6명을 확보하였고, 관련 예산도 '09년 2억원에서 올해 5억 6천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 향후에도 국외문화재 환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당자	임승경 연구관
연락처	042-860-9180

2.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지 훼손 심각, 문화재청 뭐하나

1) 문화재청 차원에서 중국 내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해 진행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가?

- 중국 내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문화유적조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중국 내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황파악 수준의 조사를 진행해 온 상황입니다.

<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

조 사 형	기 간	사 업 내 용
해외소재(중국) 문화유적 현황조사사업	'92.12월	○길림성일원 고분 조사
	'94.10-11월	○길림성·요녕성일원 유적조사
	'95.11-12월	○요녕성·산둥성일원 유적조사
	'96.12월	○산둥성·상해시일원 유적조사
	'99.	○길림성·요녕성 유적조사
중국 소재 우리역사관련 현황조사	'00.	○하남성·길림성 유적조사
	'07.7-8월	○길림성·흑룡강성일원 우리 역사 관련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용담산성, 옥정산고분군 등 고구려·발해 관련 유적 10건 조사
	'07.11-12월	○요녕성(요동지역)일원 우리 역사 관련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쌍타자유적, 강상무덤 등 고조선·고구려 관련 유적 5건 조사
	'08.8-9월	○요녕성(요서지역)·내몽고자치구일원 우리 역사 관련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신락유적·십이대영자유적 등 고조선 관련 유적 15건 조사

2) 문화재청에서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훼손이나 난개발 등에 대해 확보한 정보가 있는가?

-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훼손이나 난개발에 대한 정보는 상기 조사 등과 같이 확보 중에 있으며,
- 중국 내 고구려·발해 유적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외교통상부와 현지 대사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국외 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국외문화재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동북공정 등에 대응하고, 국외문화재 관리 방안 수립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 고고연구실
담당자	여성희 사무관 / 이규훈 연구관
연락처	042-481-4731 / 042-860-9172

3) 문화재청이 앞장서서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야 올바른 역사정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봄. 문화재청 차원에서 잘못된 점은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운 점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문화재청은 중국, 러시아 등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지난 '92년부터 실시하여 기록보존 및 원형유지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유적들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직접적인 보호·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 문화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국 정부와 양자간 문화재 교류를 강화하면서 고구려·발해유적의 보호·관리가 강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보호·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이만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73

3. 광화문 단축 복원 의혹 말끔히 해소해야

1) 광화문이 지난 8월 15일 일반에 공개되었음.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 19일이 공사마감 시한임에도, 청장께서 급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였음. 관례상 진행 공정별로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전통공사의 원칙이라는데 일각에서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의식해서 무리했다는 의견이 다수임. 이러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광화문 복원공사는 광복절 및 G20정상회담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추진한 것은 아니며, 다만 광화문 육축시공 및 목공사 등은 일부 공종을 조정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내부담장 구역안의 복원건물 6동, 어도 등도 복원하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 제 6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선 공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부 미완성 궁장, 하수암거 이설 및 궁장 일부 복원은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 복원공사가 완벽하게 제대로만 마무리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흠이 충분한 기간 건조하지 못해서 기와를 받쳐주는 목재가 썩고 부식될 우려가 있다고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 광화문을 비롯한 건물과 궁장 지붕의 강회다짐은 감리단의 철저한 감리 하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쳐 기와 잇기를 시행하였습니다.
- 12월 공사 준공 전까지 책임감리로 하여금 시공 상태확인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감리토록 하고,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복원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여정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1

4. 문화재청 공식 영문 홈페이지 관리 소홀

1)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현재까지 내부인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영어표기나 설명 자료에 대한 전문가 검수과정이 있었는가?

- 영문홈페이지 내용 중 문화재 설명자료는 전문가 번역 및 원어민 감수를 마친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간단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문화재청 소식 및 질의응답의 내용 작성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명칭의 영문표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 중인 문화재 명칭의 일관성 있는 외국어 표기를 위해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말에 기준안을 확정, 2011년에 용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표기 기준이 확정되어 공표되면 영문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입니다.

2) 한글홈페이지에 비해 영문홈페이지의 자료 업데이트가 현저하게 늦으므로 즉각적인 자료 업데이트와 수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미지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한글 홈페이지와는 달리 영문 홈페이지는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이 없어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용 경 의 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공능문화재과
담당자	박정상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6

1. 4대궁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1) 4대궁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3D영상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후 계약된 내용대로 보수가 되었는지? 무상유지보수 기한이 최종 보수완료된 시점으로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4대궁 및 종묘의 종합경비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2009.7.7.~2012.7.6.입니다.
- 이 사업은 감사원 감사(2009.11~12월) 및 감사원 처분요구(2010.4월)에 따라 3D 영상통합감시 기능 구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영상 제공 구현, 영상추적서버(16대)의 CPU 사양 교체, 카메라 폴(200개소) 접지의 적정 시공, 관제센터(3개소) 랙의 접지 시공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영상추적기능 등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부당 준공처리하여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3D영상통합감시 기능을 2010.2.13. 완료하는 등 영상추적기능 이외의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0.5.27~28. 문화재청, 외부전문가 및 감사사 합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미구현 중인 영상추적기능은 '10.10.29. 기한으로 하자보수를 조치 중이며, 향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 확인 및 법률검토를 통해 무상유지보수기간의 연장, 부정당업자 제재,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등 가능한 조치를 금년(2010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조치를 시행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2) 사업내용 중 문화재청에 설치하려다 못 만든 관제센터용 IT 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차라리 반납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긴급히 사업이 추진될 당시, 정부대전청사 내 철도공사 이전 계획으로 문화재청 관제센터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공간이 확보 되지 않았고, 예산 미확보 등으로 문화재청 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방제를 위해 경복궁, 창덕궁(창경궁, 종묘 포함), 덕수궁에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창덕궁에 임시 보관 중인 장비는 종합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 사업 계약 당시 현대정보기술에서 제안한 내용 중 선진사례 벤치마킹 계획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시찰을 가지는 못했다면 애초계약이 부적절했다는 것 아닌가?

- 시공사(현대정보기술)는 제안서 제출 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계획을 제안하여 협상 과정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선진사례 벤치마킹 계획은 시공사가 특별제안한 사항으로 계약 시 그 비용은 별도 산정되지 않았고 사업비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청은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도 조달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입찰과정 : 입찰공고(조달청) → 시공사 제안서 제출 및 기술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조달청) → 협상(문화재청) → 계약(조달청)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황권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1

2. 과도한 민간의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1) 문화재 원형보존이 원칙이긴 하지만 아예 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해 외국사례도 참고하시고 연구하신 후에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거나 발굴 자체를 국가에서 대행해 주는 등의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일본의 교육위원회 산하 매장문화재센터, 영국의 잉글리쉬 헤리티지, 프랑스의 국립예방고고학연구소와 같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굴하는 경우와, 민간이 발굴하더라도 정부자금 등에서 지원하는 사례(미국, 프랑스 등) 등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원인자 부담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표 및 시굴조사비, 유물 보존처리비, 보고서 발간비 등 국가 지원확대 등)

2) 문화재보호기금을 이용하거나 발굴관련 기금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적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기금을 통한 국가지원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3.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의 비효율적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 청주공항이나 대구공항 문화재감정관실처럼 감정실적이 많지 않은 공항은 상근 직원을 따로 두지 말고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해당공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는 반출문화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 비상근 감정관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재감정관실은 기본적으로 국제공항·항만 등을 통해 우리문화재가 외국으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최전방 감시초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감정관실 감정위원은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외반출예정 문화재 오인물품에 대한 문화재 여부 확인 : 민원인의 신청 시 또는 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이 발견하여 요청 시 실시
 - 타 감정관실과 합동감정 :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감정관실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또는 타 감정관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실시
 - 각종 검색대(휴대품, 수화물 등) 검색요원 대상 문화재 검색요령 등 교육 : 연 4회 정기교육 및 수시 현장교육
 - 문화재 수출(반출) 금지 제도 및 문화재 오인물품 사전 확인제도 홍보 : 세관, 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 회의 참석, 여행객 등에 안내 전단지 배포 등
- 또한, 감정관실은 수입골동품 관세 부과(100년 이상 면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세관에 협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골동품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화재 사범 단속에 의한 압수물 감정, 관내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국외반출예정 물품 감정 시 매매업자 특별관리 등을 통해 사범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제선이 증가 추세에 있고 계절에 따라 심야시간 또는 새벽시간에도 비정기편이 편성되어 운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청의 사범 단속반이 있는 대전에 인근하고 있어 감정위원이 문화재 사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같이 참여하거나 압수한 물품을 감정('09년 41회)하고 있습니다.
- 대구공항도 정기편 외에 계절에 따라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비정기편이 편성되어 운항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구·경북지역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미술품 시장이 형성된 지역으로 지역 내 문화재 불법유통 감시기능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의 경우는 국외반출예정물품에 대한 감정실적이 적더라도 국제선 운항 편수 및 출국수속시간(새벽 또는 심야시간) 대응, 검색요원 교육, 유관기관 협조, 문화재 사범단속 업무 지원, 불법유통 감시기능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직 공무원인 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하여 왔으나, 지적하신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해당공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이 문화재 오인물품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감정을 받는 방안은 사전에 감정하더라도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감정 확인서 발급 및 봉인지(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의 현장 의견이 지배적이나, 과거 각 시·도와 공항에서 병행하여 감정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화재 여부 감정을 받는 민원인 편의 측면과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라는 공익목적을 감안한 최적의 감정 방안을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박왕희 서기관
연락처	042-481-4914

4. 국가지정문화재 졸속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검사 졸속 시행에 대한 재조사 진행 및 문화재 정기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마련 필요

- 문화재 정기조사의 근본취지는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존상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의 2009년도 정기조사 계획은 우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자체 인력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당초 조사인원 12명) 되었으나, 2009.4.27 조직개편으로 건축문화재과와 동산문화재과가 통합되어 유형문화재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직원들은 대폭 축소되고 국보·보물 총 1,941건을 총괄하게 되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명이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조사를 전담한 담당자는 문화재 업무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직원(시설사무관)으로 해당 지자체 직원과 동행하여 현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인 사항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부분이 수백 년 이상 이어져 온 목조 및 석조문화재로서 일부 기와 및 벽체 탈락 또는 단청의 변색 등 구조적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자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0년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는 감사원 지적을 수렴하여 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상 5년을 주기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차기 조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산문화재의 정기조사는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직공무원,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지방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해당 박물관의 학예직 및 관련 전문가가 정밀조사토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인규 연구관 / 김종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8 / 4964

5.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전승대책 필요

- 1) 중요무형문화재 114종목 중 21개 종목(18.4%)은 무형문화재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없고, 어렵고 힘든 종목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등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길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며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 우리 청은 28개 전승취약종목을 지정하여 전승자 양성과 수요 창출을 위한 판매전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종목의 전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지속적 지원 및 정책개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 2) 무형문화재 기능종목의 경우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문화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분들의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봄.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전수교육 운영 및 관리가 취약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및 일반대학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 기·예능 교육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대한 접근기회 다양화 및 무형문화재 전승인력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연계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추진('10.10~12월) 중에 있습니다.

3) **송례문 현장 간담회에서 제와장이 판로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보수할 때는 일반제작 기와가 아닌 전통기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 이분들의 판로가 확대되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무형문화재 종목 중 사양화되어 가는 공예기술의 전승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경쟁력 확보와 자생력을 길러주는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으로서 (1) 공연·전시기회 확대 (2) 판매 유통망 확보 지원 (3) 공예원료와 재료의 품질개선 및 지원 (4) 기업의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참여 (5) 합동공개행사비용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통공예에 대한 사회적 수요창출과 시장 확대를 위하여 전통공예판매전 개최(2010.6)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문화재 수리공사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6. 문화재매매장부, 내용검사가 중요

1) **매년 초에 문화재 거래상들의 전년도 매매실적을 적은 장부를 시군구에서 검인함. 지자체에서 검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도난·도굴된 문화재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07.7월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였으며, 문화재의 매매·교환 등 거래내용을 기록한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에는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특기사항, 문화재 사진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년도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문화재 매매업자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검인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매매장부에 검인 도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장부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비치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음. 그렇다면 문화재 매매업자들이 신고한 거래내용은 성실히 신고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문화재가 얼마나 거래 되었는지는 알고 있는지?

- 시·군·구에서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별도의 지침을 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화재매매장부의 기재내용(거래자 인적사항, 문화재명, 수량, 사진)에 따라 문화재 거래현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들이 성실히 장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시·군·구의 문화재매매업 관리 실태 및 문화재매매업자의 장부 기록·검인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장부 기록 상황 확인 등 지도감독 수시로 실시하여 거래내용을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매매장부의 검사에 대한 지침과 함께 검인 내용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 거래내용에 대해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무작위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에 기재된 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군·구에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시 장부에 기재된 문화재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난문화재와의 비교 확인, 무작위 표본조사로 장부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시·군·구에 매매장부 검인 지침을 시달하는 등 도난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장부 검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김성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4

7. 지자체 보조금 사업, 집행률도 낮고 관리도 안되고

1)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등을 매입·정비하도록 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보조금 집행행실적이 저조하고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왜 그런지 원인을 따져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야 함. 또한, 지자체 교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후관리 미흡사업은 토지 매입 후 건물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5~6년간 지연된 것으로 금년 8월에 건물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되었으며, '11년 1월까지의 건물을 매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시달 시 매입한 토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정비와 수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실행행률 개선을 위해 설계승인절차 간소화 및 사전통지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06년 41.7%에서 '09년 67.5%로 실행행률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차등지원·조정 등 중점관리 등을 통한 실행행률 제고지침('10.5.7)을 시도에 통보하였고, 현장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담당자	안형준 사무관/이달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16/860-9125

8.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방재과 설치 필요

1)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문화재방재' 분야를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 문화재 방재에 대한 특화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 태풍, 지진, 방화 등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재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의 문화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 대응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및 방재 관련 사항을 주 업무로 하는 문화재안전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방재전문가 3명을 확충(2010.9.30) 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방재분야 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는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소요정원 협의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